

제43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2월10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2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2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27.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2)
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3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4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4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4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4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6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
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2)
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6)
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0)
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7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3)
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7)
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2)

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0
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0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41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1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8
17.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52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52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52
2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52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52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52
2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62
2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62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62

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62
27.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42)	62
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62
3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72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3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3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81
4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04)	81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81
4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81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81
4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81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81
4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4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81
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5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5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81
5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5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5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5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5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81
6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81
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93
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93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93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93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93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93
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	93
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2)	93
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6)	93
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93
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93
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93
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93
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0)	93
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93
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93
7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93
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93
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3)	93
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7)	93
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2)	93
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부위원장 제출)**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부위원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추미애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기재위 소관 2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국가가 출자·출연한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를 청산할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대안)은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 되는 경우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는 것에 맞추어 이를 농어촌특별세법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형일 차관님, 우리 예타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송석준 위원 지금 그게 개선이 좀 됐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예타 규모를 증가시키는 그것을 현재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송석준 위원 어떤, 금액 규모를 좀 상향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송석준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SOC의 경우에는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리는 거랑 R&D의 경우에는 배제하는 경우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왜 지연되고 있어요? 기재부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됐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저희들은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떤 식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송석준 위원 500억을 1000억으로 올리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소위에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사실상 이게 최근에 물가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도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축소해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애로 구간,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업 현장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비현실적인 규모를 현실화하는 건데, 그래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제대로 설득을 하고 통과시켜서 사업이 원활하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해 정말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예산도 많이 늘렸잖아요. 그 예산들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불합리한 요인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게끔, 그것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설득해서 통과시켜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차관님, 지금 여기 올라온 법안 안전에 대한 거는 아닌데 뒤의 법안을 보다 보니까 기재부 관련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외교부에서 ODA 관련해서 하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해서요 기재부가 지금 총리실에 유상 관련 내용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최혁진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최혁진 위원 유상 관련 자료제출까지 받아야 국조실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유·무상 관련 ODA에 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한데 기재부가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기재부가 과거에 하던 얘기 아닙니까? 유상과 무상이 같이 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유상·무상 따로따로, 기재부하고 외교부가 따로 가면 사건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라오스 댐 무너졌을 때도 무상은 동네 마을 가 가지고 무상 지원한다고 교육 인프라 해 주고 다 하다가 갑자기 유상으로 댐 지어 가지고 그동안에 정부가 쏟아 놓은 부분들 그냥 물로 다 이렇게 소멸되어 버리게 만들어 버린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유상과 무상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함께 가도록 이끌어야 될 기재부가 반대한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무상이 같이 가야지만 국익에도 효과가 되고 현지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구요.

하여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가 관련 내용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차관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방금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진입하고 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엄 해제 의결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반대를 해서 어쨌든지 간에 구속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 자리에 있는 신동욱 위원이 같이 있으면서 이 기사에 의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다 나와라. 계엄 해제 표결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위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척결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여기 법사위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서 내란에 구체적으로 공동범으로 개입되어 있는 분은 법사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님하고 신동욱 위원님 두 분 다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되는데……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신동욱 위원 기사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신상발언 좀 주세요.

○신동욱 위원 기사를 잘못 읽었어요.

○위원장 추미애 일단은 대체토론시간이니까 신상발언하실 분은 뒤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대체토론시간에 개인 신상 얘기를 했잖아요!

○최혁진 위원 자기 대체토론 발언 통해서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관계 기관이……

○신동욱 위원 대체토론시간에 개인 신상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최혁진 위원 저는 제 발언시간에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동료 위원에 대해서 모독성 발언을,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나경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인 행위를 합니까?

○신동욱 위원 그러면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관계 기관이 계속 번갈아 교체가 되므로 대기 중인 관계 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단 대체토론에 집중해 주시고 대체토론이 더 이상 안 계시다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송석준 위원 우선 간단하게 신상발언 기회 주세요.

○나경원 위원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한동훈한테 전화한 것 맞아요?

○신동욱 위원 아니, 조용 좀 하라니까요.

○박은정 위원 한동훈한테 본회의장 나오라고 한 것 맞아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신동욱 위원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대체토론 있습니다. 저 대체토론 있다고 손 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대체토론 있다고 손 들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이라고 하세요.

○신동욱 위원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박은정 위원 한동훈한테 전화한 것 맞아요?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추미애 대체토론 발언을 얻어 놓고 신상발언하시면 마이크를 바로 끄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대체토론 신청해서 저 인신공격한 최혁진 위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곽규택 위원 최혁진 위원은 뭐예요, 그러면!

○나경원 위원 아니, 예전에는 다 쥐 놓고서는 지금 뺏니까? 대체토론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일단 표결하고 합시다, 발언을 드릴 테니. 표결하고……

○송석준 위원 아니, 왜들 이러세요?

○김용민 위원 표결하고 하세요, 표결하고.

○나경원 위원 대체토론, 저 기재부차관한테 할 말 있어요.

○박은정 위원 아니, 공소장에 있는데 뭐가 인신공격이에요?

○김용민 위원 표결하고 하세요. 표결하고 하세요, 표결하고.

○위원장 추미애 표결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신동욱 위원 아니, 대체토론이 아니라 기사를 읽어도 똑바로 읽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읽고……

- 박은정 위원 아니, 공소장에 있다고요, 공소장에.
-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하세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공평하게 회의 진행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일단 이거는 표결을 해서 보내 드리고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하세요, 대체토론.
- 박은정 위원 공소장, 공소장.
- 신동욱 위원 아니, 대체토론한다면서요. 그러면 신상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그냥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일단 이거는……
- 박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소장에 있어요, 공소장에.
- 김용민 위원 마무리합시다, 이거는.
- 위원장 추미애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이게 원안이니까 그냥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 박은정 위원 추경호 공소장에 있어요, 본인이 전화한 것.
- 신동욱 위원 알았다니까요. 조용히 좀 하라고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은정 위원 전화한 것 여기 있잖아요, 전화한 것.
-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하라고.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 박은정 위원 아니, 새로운 얘기잖아요.
- 신동욱 위원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요?
- 박은정 위원 새로운 얘기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박은정 위원 이 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서 본인 수사받고 기소돼야 돼요.
- 곽규택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하세요, 박은정 위원.
- 박은정 위원 왜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나 조용하세요.
- 송석준 위원 여기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다른 안건 넘어가기 전에.
- 곽규택 위원 뭘 자꾸 앵앵 거려?
- 신동욱 위원 신상발언 주세요.
- 최혁진 위원 아니, 맨날 시끄러운 건 본인들이면서 남의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왜?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최혁진 위원. 기사를 읽으려면 똑바로 읽으세요.

○위원장 추미애 아니, 최혁진 위원 보고 하지 마시고 저 보고 하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 최혁진 위원이 저 보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보고 하세요.

○최혁진 위원 언론을 보고 얘기하세요, 언론을 보고.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 보고 하세요.

○신동욱 위원 제가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추경호 의원 공소장에 보면요 그 당일 날 밤에 제가 본회의장 갔습니다. 가서 한동훈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당이 분열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의를 잘하셔서 당이 한 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그것 맞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박은정 위원 아니,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잖아요.

○신동욱 위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최혁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에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동욱 위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 방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박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발언 방해하지 말라고요!

○박은정 위원 아니,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박은정 위원!

○박은정 위원 이게 공소장이예요.

○곽규택 위원 박은정 위원!

○신동욱 위원 새로운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박균택 위원 소리 좀 지르지 맙시다.

○곽규택 위원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발언시간 가고 있잖아요!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박은정 위원 아니, 공소장이잖아요.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세요.

○박균택 위원 곽 위원님, 소리 좀 지르지 맙시다.

○김용민 위원 들어 봅시다.

○신동욱 위원 지금 계속 그냥 둘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위원 제지해 주세요. 제지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 방해 못 하게 하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 제지해 주세요.

- 박은정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 송석준 위원 경고 좀 주세요, 경고를.
- 신동욱 위원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 김용민 위원 말씀하세요.
- 송석준 위원 경고 좀 해 주세요.
- 박은정 위원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는지……
- 곽규택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 나경원 위원 제지해 주세요, 위원장.
-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 김용민 위원 말씀하세요.
- 박은정 위원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라고 한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을 해명하세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 제지해 주세요.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의 부분은 필요 없고……
-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하라고!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 나경원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법사위가 수사기관입니까?
- 박은정 위원 앞부분은 설명할 필요 없고 뒤의 부분을 설명하세요, 뒤의 부분을.
-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 나경원 위원 법사위가 수사기관입니까?
-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 김용민 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다 들리니까.
- 최혁진 위원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냥!
- 김용민 위원 다 들리니까 말씀하시지요.
- 박은정 위원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지……
- 송석준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허락받아서.
- 나경원 위원 제지 좀 해 주세요, 제지 좀.
- 신동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목소리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사실입니다. 그것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 박은정 위원 아니,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지……
- 곽규택 위원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 신동욱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라’라든지 이런 얘기는 일체 한 바가 없어요.
- 박은정 위원 그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예요?
- 신동욱 위원 그 부분은 중앙일보의 해석이고 특검의 해석입니다.
- 박은정 위원 아니, 공소장에 있는데 뭘 중앙일보의 해석이에요?
- 신동욱 위원 특검의 해석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 박은정 위원 아니, 본인이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신동욱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우리 당이, 내가 당시 당 대변인으로서 ‘원내대표

와 당대표가 찢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빨리 협의하셔서 당의 입장을 정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당대표가—당대표가 표결권도 없는데—입장을 정해서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게 대화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뭘 국회 밖으로 이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고,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는가.

○박은정 위원 특검이 허위 공문서 작성했습니까? 특검이 허위 공소장 작성했습니까?

○신동욱 위원 특검이 허위 공소장을 썼다니까요. 특검이 허위 공소장을 썼다니까요.

○박은정 위원 기소나 되세요, 본인이 공범으로.

○나경원 위원 특검이 오죽 편파적입니까?

○신동욱 위원 오죽 편파적이에요?

○나경원 위원 아니, 법사위가 수사기관이야?

○신동욱 위원 그런데 아니, 그 얘기를 가지고 무슨…… 지금 성추행한 장경태 위원도 들어와서, 오늘도 지금 버젓이 들어와서 있다가 좀 전에 나갔는데……

○박균택 위원 아니, 또 그런 말씀을 합니까?

○김용민 위원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곽규택 위원 해야지. 왜 못 하게 해요? 해야지, 상대방이 하는데 해야지.

○박균택 위원 정말 왜 그러십니까?

○나경원 위원 해야지.

○신동욱 위원 아니, 무슨 할 말이 얼마나 없으면 내가 우리 당 단합하라고 얘기한 게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나경원 위원 아니, 장경태 위원은 어디 와서 앉아 있습니까? 장경태 위원은 어디 와서 앉아 있습니까?

○신동욱 위원 우리 당 단합하자고 얘기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못된 얘기예요?

○최혁진 위원 잘못된 거지요!

○신동욱 위원 뭐가 잘못돼요, 잘못되기는?

○최혁진 위원 내란 세력 단합하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지!

○신동욱 위원 특검도 잘못 썼고 기사도 잘못 쓴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무질서하게 간섭하는 행위 강력히 경고 주시고 퇴장시키세요, 퇴장!

○나경원 위원 경고 좀 주세요, 경고.

○최혁진 위원 무질서는 어제 자기들이 본회의에서 해 놓고는!

○신동욱 위원 왜 내가 발언하는데 두 사람이 끼어드냐고!

○최혁진 위원 발언 끝났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정말 국힘 위원님들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 뭐가 지나쳐요, 내가 발언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나경원 위원 뭐가 지나칩니까? 뭐가 지나칩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도대체 배운 사람의 품격을 갖춘 사람은 김재섭 위원 한 분 말고는 없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이고 막말들을 함부로 하십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누가 누구에게 모욕을 주고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박균택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몰라요?

○곽규택 위원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신동욱 위원 아니 모르냐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생겼는지?

○박균택 위원 그거를 모르는 분들 같으면, 두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위원장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국회의원은 배운 사람만 하는 줄 아세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려고 와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데 ‘추경호 의원하고 합을 맞춰서 처리하라’ 이 얘기는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한테 뜻을 맞춰서 표결 참여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그 해석을 왜 박균택 위원이 하냐고요!

○박균택 위원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지적입니까?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게 타위법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지금?

○박균택 위원 아니, 왜 안에서……

○나경원 위원 지금 법사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니, 법사위가 수사기관입니까?

○곽규택 위원 타위법 하고 있어요, 타위법! 기재위 법 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예요, 지금 그게?

○최혁진 위원 중요한 현안이지요!

○박균택 위원 지금 의사에 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나경원 위원 법사위가 수사기관입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무슨 의사에 임하는 태도를…… 아니, 내가 한동훈 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한 것이 의사에 임하는 태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나경원 위원 법사위가 수사기관입니까? 법사위가 수사기관입니까?

○박균택 위원 국힘 위원들은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까! 왜 지성들이 없어요, 논리도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없고!

○곽규택 위원 박 위원님이 제일 시끄러워요, 지금. 제일 시끄러워요, 지금!

○신동욱 위원 아니, 왜 무슨 얘기 하냐고요?

○나경원 위원 아니, 당신들은 마이크 가졌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법사위가 수사기관입니까?

○곽규택 위원 본인이 제일 시끄러워요, 지금!

○박균택 위원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신동욱 위원 본인이 더 시끄러워요, 지금.

○나경원 위원 그저 내란 빼놓고서는 할 말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박균택 위원 정말 배운 게 없어요.

- 곽규택 위원 마이크 차고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 신동욱 위원 백현동 변호사 나가, 그러니까 당신도!
-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러 들어온 사람을 상대로 뜻을 맞춰서 행동하자는 얘기는 투표에 응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 신동욱 위원 아니, 왜 허위 사실을 얘기하냐고요.
- 박균택 위원 그 얘기를 지적한 거를 가지고 인신 모독을 저렇게 가하는 태도 저걸 그대로 내버려두시겠습니까?
- 신동욱 위원 아니, 왜 허위 사실을 얘기하냐고요.
- 나경원 위원 장경태 위원이나 빨리 나가라고 그러세요.
- 박균택 위원 나경원 위원님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처신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 곽규택 위원 최혁진 위원부터 말해야지요, 그러면!
- 박균택 위원 저런 분이 어떻게 법사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초장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두십니까?
- 곽규택 위원 최혁진 위원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 박균택 위원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내보내십시오. 퇴장시키시든 발언권을 제한시키시든 경위권을 발동해서라도 내보내십시오. 왜 저런 태도를 그냥 내버려두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의 너무 온화한 그런 대응도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을 잘못 들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의 인격 모독을 함부로 해 대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너무 지나쳐요.
- 곽규택 위원 아이고, 너무 온화하셔서. 너무 온화하셔서 너무 겁나.
-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님, 적당히 하세요.
- 신동욱 위원 박균택 위원, 박균택 위원, 누가 누구의 인격을 모독을 했느냐고요, 지금! 누가 누구의 인격을 모독을 했느냐고요!
- 박균택 위원 신동욱 위원님, 내가 그동안에 언론인 출신으로서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참아 왔지만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합니다!
- 신동욱 위원 아니, 누가 누구의 인격을 모독을 해요?
- 박균택 위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의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신동욱 위원 발언을 하려면 기사라도 똑바로 읽고 와서 해야지, 기사에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박균택 위원 몇몇해요, 이 자리에서? 박균택 위원, 몇몇해요? 박균택 위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자격 있습니까, 지금? 자격 있습니까, 지금?
- 박균택 위원 국힘의 수준이 그렇고 소속 언론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 신동욱 위원 백현동 변호사, 백현동 변호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 있어요, 지금?
- 박균택 위원 그거는 소속 언론사와 소속 정당을 모독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제발 품격 좀 갖추세요!
- 신동욱 위원 백현동 변호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 있어요?
- 박균택 위원 제발 품격 좀 갖추세요!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박균택 위원 신동욱 위원님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갈수록 실망하

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품격 좀 갖추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 저는 일체의……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엄정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말해서 안 되면 퇴장 명령을 내리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자, 이제……

○박균택 위원 그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거든 경위들을 동원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퇴거 불응으로.

○곽규택 위원 여기가 무슨 군대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위원장 추미애 김재섭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군대를 모독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선배님!

○박균택 위원 군대를 모독하지 마요!

○신동욱 위원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

○김용민 위원 김재섭 위원 말씀 들어 보시지요. 발언하신다잖아요, 김재섭 위원.

○박균택 위원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발 질서 좀 지키세요! 질서 좀 지켜요!

○곽규택 위원 본인이 지금 제일 고향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이 소리치고 있구면. 본인이 소리치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신동욱 위원 한심스러워서 진짜…… 누가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났는데! 신문 기사를 읽어도 똑바로 좀 읽어야지.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박균택 위원 정말 저쪽은 어떻게 안 배운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뭘 배운 겁니까?

○신동욱 위원 신문 기사를 읽어도 똑바로 기사를 읽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써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여러분, 김재섭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허락받아서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신문 기사를 왜곡해서 읽습니까? 써 있는 대로 읽지, 써 있는 대로.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 적당히 하세요. 본인 인생을 돌아보세요. 적당히 하세요.

○신동욱 위원 뭘 써 있는 대로 읽어, 지금?

○최혁진 위원 써 있는 대로!

○곽규택 위원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학력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봅시다, 위원님들.

○나경원 위원 어디다 배우고 안 배우고입니까? 적당히 하세요!

○김용민 위원 들어 봅시다.

○박균택 위원 국힘 위원님들이 배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분들은 그럴 리가 없

어요!

○곽규택 위원 뭘 배웠는데요, 선배님은? 뭘 배웠어요?

○나경원 위원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세요. 국회나 제대로 알고 하세요.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봅시다!

○박균택 위원 국힘 위원님들보다는 나아요.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 소리 지르지 마시고……

○박균택 위원 여전히 배워야 할 사람들이지만 국힘 위원님들보다는 낫다고요!

○곽규택 위원 백현동 변호사님이시면 체통을 지키세요, 좀.

○박균택 위원 함부로 그렇게 모독하지 않아요, 논리도 없이 소리 지르는 일 안 하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경원 위원 누구를 모독합니까? 누가 누구를 모독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모독했습니까?

○곽규택 위원 본인이 제일 고향치고 있구먼, 지금.

○박은정 위원 할 말 없으면 인신공격합니까, 할 말이 없으면?

○신동욱 위원 가서 백현동 변호나 열심히 하세요,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그러면.

○박균택 위원 신 위원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왜 수준이 그래요?

○김재섭 위원 박균택 위원님, 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실망이에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나를 지적을 해요?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봅시다.

○김재섭 위원 위원님들,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최혁진 위원이 쓸데없는 얘기해서 생겼지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왜 대응을 그렇게 하십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기사라도 똑바로 읽으라고, 그러니까.

○최혁진 위원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박균택 위원 틀린 말도 언급 안 했는데 소리를 그렇게 지르십니까, 왜? 왜 모독을 합니까? 왜 모독을 했습니까?

○신동욱 위원 기사라도 똑바로 읽으라고, 그러니까. 기사에 난 거 나도 다 봤어요.

○곽규택 위원 박균택 위원님, 배웠다는 김재섭 위원이 하시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 자제합시다. 자중합시다. 들어 봅시다.

○위원장 추미애 김재섭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할 말이 그렇게 없어?

○박은정 위원 공소장에 있잖아요.

○신동욱 위원 조용 좀 해요, 그러니까!

○박은정 위원 왜 저한테 조용하라고 그러세요?

○신동욱 위원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하라고.

○박은정 위원 본인이나 조용하세요, 본인이나.

○**김재섭 위원** 배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날 열여덟 명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이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신동욱 의원을 직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표결 해제에 참여하는 데 신동욱 의원의 그 어떤 방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요.

사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다가 법사위원회에 와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하고 싶으신 말씀들만 다 하시고 신상발언하시면서 상대방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토론이 되도록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타위법 심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의견을 들어 주시면 좋겠고 처음부터 최혁진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이런저런 다른 얘기 하시니까 이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첫인사로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김재섭 위원님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 주신 의원님이셔서 저는 평소에 대단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셨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1명이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예결위장에 있던 의원 3명을 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장내 소란)

저는 내란 척결이 지금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내란 수괴의 내란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 수괴의 내란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과 단절해야 법사위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법을 다루는 곳이고 피감기관들이 윤석열 내란 수괴의 그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죄하고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피감기관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끝없이 옹호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그것을 도와줬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잘못된 범죄행위를 그 표결 해제에 참여했던 의원마저도 지금 감싸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국회 법사위가 굉장히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법사위에, 우리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앉아 있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발 윤석열의 잘못된 과오, 내란에 대해서 반성 하시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경원 의원님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태도, 법사위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유감입니다. 법사위장에서 그러신 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장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곽규택 의원님도 같이 동조하시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님, 통일교 관계자하고 무슨 통화 하셨는지 오늘 육성이 나왔어요.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 대상인 이 법사위원들하고 계속해서 법사위원으로 국회 법사위를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매우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특검 수사, 지금 편파 수사한 거 드러나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검 수사, 편파 수사 드러나니까 물타기 나온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위원님들 쌍방 간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적당히 제가 드렸으니까……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신상발언 주세요.

○**신동욱 위원** 백 번 천 번 얘기해 보세요. 소설에 하나도……

○**박은정 위원** 이거나 해명하세요.

○**신동욱 위원** 팬찮다니까. 나는 소설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박은정 위원** 공소장에 있어요, 공소장에.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소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렇게 신상발언 포함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호 공격하기로 법사위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관장들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박균택 위원과 박은정 위원이 저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발언을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신상발언을 편파적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하고 박은정 위원이 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상발언을 주셔야지요. 회의 진행을 저한테는 입을……

○**위원장 추미애** 이 법사위가 나경원 위원의 독무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 독무대도 아니에요, 여기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이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좀 들으세요!

○**박균택 위원** 제발 조용히 좀 합시다!

○**최혁진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신동욱 위원** 제대로 진행 좀 하세요!

○**김용민 위원** 좀 들으시라고요!

○**신동욱 위원** 제대로 진행 좀 하시라고요!

○**김용민 위원** 기본들이 안 돼 있어, 기본들이!

○**위원장 추미애** 그냥 계속하세요.

(장내 소란)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3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조성 및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안 제15조·29조·31조·35조에서 국유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국가재정법 개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체계 정합성, 유사입법례 및 정부조직법 시행 예정 사항을 고려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는 제정안과 같이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세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먼저 산업통상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지금 주 52시간 예외 부분은 빠진 채 통과된 것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 산업위에서도 여야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양당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에……

○나경원 위원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장?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정부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것처럼 부대의견에서 각계가 같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노동계까지 포함한 논의를 계속해 가면서……

○나경원 위원 정부의 입장을 말하라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산자부 차원에서는 52시간 예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회적 합의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제발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과 박은정 위원이 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지만 끝끝내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의원 시절에 한 필리버스터에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이러한 필리버스터, 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것은 의회 폭거입니다. 단순히 권한남용 여부를 떠나서 소수당의 의회에 있어서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

하는 의회 폭거입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권을 뺏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의회 폭거라고 늘 이야기해 왔는데 어제는 이제 국회의장마저도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국회 관행과 그동안의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들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차관님, 여야 합의 처리돼서 온 법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부대의견에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지금 산자위에서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원래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가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해서 합의 처리해서 지금 올라온 법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AI 등 여러 가지 산업 전반 자체가 개편되고 있는데 반도체특별법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시급하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오늘 2시에 이미 용산에서도 육성 방안 발표가, 각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진짜 여야를 떠나서 국회,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다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중요한 토론들을 많이 하는데 물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위원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물을 지키지 않아요. 품격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국회가 싸우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왜 저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왜 소리 지를까 이런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시비는 가려집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고 옳은 소리를 하는지 시비는 가려집니다. 하지만 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쪽은 물을 깎니다. 판을 깨요.

나경원 의원 어제 필리버스터 했던 것 정말 온 국민이 볼 때 창피했습니다.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국회법에 돼 있는데 의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마이크 끄니까 무선 마이크 가지고 오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벌을……

○나경원 위원 무선 마이크는 강선우 의원도 달고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강선우 의원은 녹음기랍니다.

○곽규택 위원 녹음기예요, 우리도.

○나경원 위원 우리도 녹음기입니다.

○김용민 위원 처벌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요. 법원에서 봐주니까, 의원직 유지시켜

주니까 국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봐줘 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또 항소 포기를 해 버렸네요. 이렇게 봐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 가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처럼 자꾸 인식하시게 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특히 룰을 지키지 않는 게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엄군을 국회에 함부로 집어넣었던 윤석열 정권과 그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주 기본적인 룰부터 지켜야 됩니다. 헌법부터 지키고 국회법의 기본적인 룰부터 좀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산자부차관님 상대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만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체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생각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법안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나경원 위원께서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에……

○**나경원 위원** EBS법이었습니다, EBS법.

○**곽규택 위원** EBS법이에요, 그게. 기억도 못 하시네.

○**조배숙 위원**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법이었어요.

○**위원장 추미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12시에 만나요, 도이치모터스’라는, 그러니까 매수·매도 신청이 뜬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량의 매도 주문을 내고 모녀시간에 매도 즉시 매수하는 그런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심 공범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빗댄 일각의 풍자 노래가 있었어요.

○**곽규택 위원** 그거랑 EBS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EBS법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그게? 아무런 내용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추미애** 그것처럼 그 의혹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것이예요, 제가 노래를 부른 것이라기보다. 이런 향간의 노래가 있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기술을 이용해서 검찰 세력들이 김건희 씨 모녀에 대한 수사를 덮어 주고 있다는 걸 타한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EBS하고 관련 있나요, 그게?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게 EBS법이 지 도이치모터스법이냐고요.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직권남용이었고 이 모녀는 핵심 공범으로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검을 통해서 날날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어쨌든 의제하고 상관없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의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배숙 위원** 없지요!

○**위원장 추미애** 의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아실 텐데 그렇게 국회를 깽판 치는 무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무

엇이 문제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시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본인이 깡판 친 것 자백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추미애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품위 좀 지키세요, 품위 좀 지켜! 깡판이라는 용어나 사용하고.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행패’라니요?

○서영교 위원 시끄러워요!

○나경원 위원 ‘행패’라니요?

○서영교 위원 시끄러워요!

○나경원 위원 어디 위원한테 ‘행패’라는 단어를 씁니까?

사과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위원장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나경원 위원 사과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위원장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나경원 위원 마이크 잡으면 다입니까? 의장하고 민주당이 마이크 다 잡고……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은 자기 마음대로 이 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행패’라니요?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그만하세요!

○나경원 위원 사과하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 위원한테 ‘행패’라고 하는데 박근혜 위원은 왜 조용하세요?

○서영교 위원 예의 좀 지켜요.

○신동욱 위원 품격 지키라고 목소리 한번 높여 주세요.

○나경원 위원 사과하세요!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이 사과하세요!

○신동욱 위원 왜 우리 편만 그렇게 관대합니까?

○나경원 위원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합니까?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이 사과하세요!

○나경원 위원 참, 어이가 없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송석준 위원 언어를 좀 정제해서 쓰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나는 지금 대체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뭐니까, 이게?

○곽규택 위원 본회의장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서영교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곽규택 위원 본회의장 들어오지도 않아 놓고 무슨……

○서영교 위원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요, 이 사람아?

○곽규택 위원 ‘이 사람아’?

○서영교 위원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요, 내가.

○곽규택 위원 ‘이 사람아’가 뭐야?

○서영교 위원 본회의장을 안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본회의장을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갔다 그래?

○곽규택 위원 서영교, ‘이 사람아’가 뭐야?

○서영교 위원 곽규택!

○곽규택 위원 사과해!

○서영교 위원 뭘 사과해?

○곽규택 위원 ‘이 사람아’가 뭐야?

○이성윤 위원 그만 시비 걸어요.

○서영교 위원 내가 본회의장 안 들어갔다고 누가 그래?

○박균택 위원 반말하지 맙시다!

○신동욱 위원 ‘이 사람아’는 괜찮냐고, 그러니까.

○박균택 위원 반말하지 마요.

○곽규택 위원 ‘이 사람아’라고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균택 위원 연장자한테 반말하지 맙시다.

○곽규택 위원 반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영교 위원 연장자한테 반말…… 위아래 예의 좀 지키세요. 위아래 예의 좀 지켜요.

○곽규택 위원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반말 막 해도 돼요?

○박균택 위원 반말하지 맙시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본회의장 안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면 돼요? 내가 본회의장을 안 들어갔어요?

○곽규택 위원 안 보이더구먼, 안 보이던데?

○서영교 위원 어디다 반말이야?

○곽규택 위원 안 보였어.

○서영교 위원 내가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

○곽규택 위원 안 들어왔어.

○서영교 위원 본회의장을 왜 안 들어가?

○곽규택 위원 하나도 안 보이더구먼.

○서영교 위원 본회의장을 내가 왜 안 들어가?

○곽규택 위원 내가 어제 다 봤어요. 안 들어와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영교 위원 나경원 의원이 그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우리는 다 보고……

○최혁진 위원 그만 조용히 하세요!

○서영교 위원 본회의장에 어제 투표 다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법안하고 관계있는 이야기하게 하세요. 이런 것을 제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내용에서 거짓말이면 사과하세요, 곽규택 위원.

○나경원 위원 제지하세요. ‘행패’라는 얘기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추미애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곽규택 위원 타령이나 하지 말고 이런 걸 제지하라는 말이에요.

○나경원 위원 ‘행패’라니요? ‘행패’가 무슨 말입니까?

○서영교 위원 여러분, 좀 조용히……

○송석준 위원 계속하세요. 정상적으로……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요.

○나경원 위원 정말 창피하다.

○송석준 위원 본인만 조용히 하면 돼요.

○곽규택 위원 이 사람아, 빨리 진행해!

○서영교 위원 시끄럽네! 시끄러워!

○곽규택 위원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시게!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본회의장에 어제 제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 곽규택 위원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곽규택 위원 안 보이던데?

○박지원 위원 내 옆에 앉아 있었어.

○박은정 위원 본인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 참 나…… 본회의장에 내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져! 책임을 져야지. 거짓말한 게 걱정스러운가? 어디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 어디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하세요.

○서영교 위원 산자부차관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을 때 아주경제 언론에 의하면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입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삼성의 법인세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가뜨렸는데 이제 좀 살리고 있는데 또 저렇게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해 가면서 한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릅니다. 저런 거 싹 다 제압하고……

저에게는 1분은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계속하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서영교 위원 저런 국민의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올 때 경제성장률 4.6%였어요. 윤석열 비상계엄 할 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싹 다 날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월급과 돈까지 주는데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비상계엄이 나고, 이러한 자들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님,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이 반도체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대한민국 경제 살려서 세계를 주름잡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

○위원장 추미애 그만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아니, 왜 대체토론을 못 하게 해요?

○위원장 추미애 이게 지금 여야가 합의돼서 올라온 법안인데 여기서 시간 끌지 마시고……

○송석준 위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예?

○서영교 위원 그만해요, 그만.

○송석준 위원 제가 반도체법 제정안 발의한 사람이에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까?

○곽규택 위원 그 내용을 토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 일부 반영됐고 일부 안 됐어요.

○나경원 위원 얘기하게 하세요.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을 왜 자르세요, 무슨 권한으로? 주세요.

○서영교 위원 자기 법이 통과됐으면 그만하면 되지, 뭘 또 들어와.

○위원장 추미애 이제 그만하시고…… 의원님 법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반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발의한 법안의 통과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보고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지원 위원 그만해, 찬성할게. 발언하면 반대한다.

○박은정 위원 찬성할게요.

○곽규택 위원 지금 중요한 법이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그냥 이의 없으면 의결하시지요.

○신동욱 위원 토론을 하게 해 주셔야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추미애 위원장 왜 이러시나.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아니 추미애 위원장님, 왜 자꾸 일어나게 해요? 아니, 내가 발의한 법안과 관련돼서 대체토론하겠다는데 왜 임의적으로 자릅니까?

○위원장 추미애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송석준 위원 절차도 무시하고……

○위원장 추미애 그 시간에 얘기하세요, 그 시간에 얘기하시라고. 마이크 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발언권 드리세요.

신속하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하시면 즉각 마이크 끄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시간 넣어 드리세요.

○송석준 위원 참, 정말…… 아니,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위원장 추미애 차관 보고 하세요.

○송석준 위원 차관님, 반도체특별법 이번에 어렵게 통과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진작 통과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 중의 가장 핵심 내용이, 52시간 노동 규제 이거를 좀 완화해 달라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송석준 위원 핵심 규제의 완화 안인데 이게 모든 반도체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연구인력들, 그야말로 우리가…… 차관님도 공부도 해 보셨지만 공부라는 것은 집중해서 할 때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연구개발을 다른 나라는, 경쟁국들은 자유롭게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하고 싶은 만큼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데 이걸 연구하다가 시간 끝나면 끝나야 되고 그리고 연구의 지속성이 없다 보면 그만큼 연구의 질과 연구의 성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번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이거를 관철시켰어야지요. 설득은 하셨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여야 간에 소관 상임위원 산업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한 결과를 반영해서 가지고 올라온 사안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 거네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니, 부대의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또는……

○송석준 위원 지금 하루, 한 시간이 급하잖아요. HBM을 넘어서 이제 HBF까지 들어가는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반도체 특례 부분을 반도체만을 위한 특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별도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송석준 위원 차관님, 우리 업계·기업들의 요즘 애로, 숨은 고통, 이런저런 루트로 많이 듣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내년 3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잘 모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 모르겠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2026년 3월 10일은 기업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다 접겠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 돈 내고 내가 열정을 갖고 만들어 낸 기업을 노조한테 바치는, 노조에게 헌납하는 그런 기업을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기업을 접겠다는 거예요. 3월 10일이 시행되는 날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그 전에 폐기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의견을 내셔서…… 여러분들 밤새 토의한다고, 토의한다고, 결과적으로 노동계에 지

배당해서 정부 정책이 바로 강성노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되기 전에 관계 부처와 긴급회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각오 좀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한 매뉴얼 작성 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산업부·기재부까지 관계 부처들이 계속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의지를 갖고.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신학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 시도별로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9조의3 및 안 제59조의4에서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59조의10제1항은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규제특례 조항을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여 신설하는 것인데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소관하여 처리한다’는 규정은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규제특례 인정의 특수성·예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지역협업위원회 등의 기능을 고등교육법의 개정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15일 시행 예정인 법률 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실 내 CCTV 설치가 교실을 교사·학생 간의 불신·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문이 모호하며 학부모의 민원, 다른 지역과 학교의 설치 여부에 따라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당할 가능성이 크고 CCTV 설치에 관한 절차·기준이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1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생의 건강검사 중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6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간의 연계·활용을 규정할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안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는 부분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6항 및 제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은옥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과 관련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회의장에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차관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전현희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서울대병원은 복지부 이관을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우선은 저희가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현희 위원**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고 살리자는 취지에서 서울대병원은 일단 시급성에서 떨어지니까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대학병원이 복지부로 다 이관이 되면 서울대병원만 교육부에 남아 있을 때 정책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전현희 위원** 지금 지역의료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사실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에 제대로 된 거점병원이 없어서 서울로 상경해 가지고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상경 비용도 발생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거주지에 따른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격차가 서울에 비해서 매우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정한·공평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의료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서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이번 법 취지 맞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지역의 중증이나 응급 환자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또 구심점 역할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거점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건데요, 물론 앞으로 교육부 소관이 아니게 되긴 하지만 여전히 임상 교육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이관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이나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교육부도 계속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복지부에 차질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교육부총리는 뭐가 그렇게 바빠요, 한 번도 법사위에 안 나오고? 차관이 유능하니까 그러나?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박지원 위원 안 들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께서 저희 장관님 어디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디 가게 만들지 말고 법사위도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차관이 너무 고생하잖아.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9항 이 문제는 물론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맡기면서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CCTV를 놓자라고 하지만 교권도 문제예요, 교권도. 선생님도 문제예요. 이러면 인권침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충분히 논의해서 이 대체 법안으로 합의를 해서 법사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는 교육부차관이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오늘 답변은 좀 시원찮아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어요. 교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를 교육행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CCTV까지 붙여 놓으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옥에 사는 것 같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지원 위원 예,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각지대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어린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요. 교실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필요를 느끼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법안을 담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주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학부모회의에서 말씀했을 때 다 찬성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차관님 방에 CCTV 달아 놓고 하루에 10시간씩 다 찍힌다 하면 되겠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실제로 교실에 설치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수학급이나 이런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아니, 특수한 교육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몇 분의, 소수의 교사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전체로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도 교권 확립도 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이니까 한번……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찬성할게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저희가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교육부차관님은 그런 것에 실력이 많지만 저는 자꾸 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제가 말씀하는 것 아시겠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교육부차관님, 절도범이 횡행합니다. 국가가 경찰 인력이 필요가 없겠다 해서 먼저 경찰 인력을 대폭 해고하거나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절도범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각 집 안 안방마다 CCTV를 설치하자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것을 해당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찰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렇지요?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학폭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일어나더라도 누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쉽게 알기 위해서 효율성이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교실 안이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체육시간을 대비해서 탈의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또 일기장을 쓸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또 교사가 교무실 같은 데는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잠시 눈 붙이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CCTV를 다 설치하면 학폭 예방이나 진압에 대해서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지만 그 1%의 효율을 위해서 99%의 인권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과연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부의 철학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철학 없는 교육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없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행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나오시라고 하는 거지요. 장관 행사의 중요성을 몰라서 우리가 시비 거는 겁니까? 교육 철학이 안 보이는 법이 갑자기 올라와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에요. 유신시대나 꺼내 놓을 법한 그런 법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교원단체의 교권 수호 이런 차원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냥 법사위가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교육부차관님, 제가 보니까 ‘교실 내 CCTV는 잘 설치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교실 내에서 초등학생이 어떻게 보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초등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소재도 파악을 못 하고 안전 문제가 생기니까 학부모들과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로 인해서……

사실 학부모들은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학부모 찬성 여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법안 내용은 교실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입문,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일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가를 가거나 식당을 가더라도 CCTV가 없는 곳이 잘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범죄 예방과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 등등 여러 가지 안전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에 있어서 사각지대 측면이 있고 그래서 복도나 출입문 같은 곳에는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와 플러스 거기서 어떤 흉포한 범죄가 일어나거나,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의 의미에서는 가장 약자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도나 이런 부분에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교육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원단체나 전교조 같은 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실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입문이나 복도 같은 곳이라고 하면 일반 아이들이 학원 가거나 하면 학원이 있는 건물이나 상가에 들어가면 전부 다 CCTV로 이미 안전 상태를 체크하고 다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설치한다면, 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안전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통과시켜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이 법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 법안에 교육부는 찬성 입장이에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꼭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드려서 수정해서 이 법안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미 수정이 반영된 건가요, 그러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교육부장관께서 거듭 안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마 저희 법사위가 2소위로 법안을 전혀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는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는 상임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나경원 위원 최근에 유명인의 소년 강력범죄 사건으로 사회가 굉장히, 다시 한번 소년범 사건에 대한 사회정의 문제와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공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입 교육제도를 보니까 학폭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전부 대입 자료에 반영이 되는 거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소년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어떤 것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나경원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울 수 있는 소년범 범죄에 대해서는 가려지고 학폭에 대해서만 드러난 상태로 일종의 이 대학입시가 치러진다면 이것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이 학폭 문제에 대해서 학폭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취·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부분도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준비를 좀 해 주시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내용 잘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 정말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에 대해서 ‘행패’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아무리 사과하라고 하셔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사과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위원장이 하실 품격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아까 본인이 필리버스터 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영상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틀어 보세요.

○박균택 위원 아니, 뭐 위원장님에 관한 영상까지 틀면서 비판을 합니까?

○나경원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제한토론’ 밑에 보면 ‘방송 4법 필리버스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마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서영교 위원 ‘도이치모터스’ 한마디라도 해 봤어,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주가조작에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국민의힘 아니야?

○나경원 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법안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본 위원의 적극적인 국회 발언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잡았군요.

○위원장 추미애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구속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위원님, ‘사과’, ‘사과’ 하시는데 ‘조선은 가만히 있어’ 그거 사과했습니까? 저는 사과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그 사과를 안 하시고 이후에 계속 ‘사과’, ‘사과’ 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부차관님, 학교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보면 법 조항에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지금 ‘교실은 제외하되’ 이런 표현은 있지만 사실상 교실이 필수 설치 장소라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면 학교 전체가 이제 다 CCTV 설치 장소가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교실이 감시하는 교실, 감시받는 교실, 상시 촬영되는 교실, 이 논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런데 외국의 법에서는 이게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법안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교실을…… 이 법에 보면 교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문에 규정이 돼 버리면 이렇게 되면 예외로 교실을 빼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이 규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다만 사고·범죄 위험이 높은 여기를 필수 장소로 하되 다만 그것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빼는 규정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학생과 교사가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것인가,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셨겠지만 법사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조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나경원 위원님은 계속 2소위 안 열어서 문제다 말씀하시지만 법사위가 사실은 체계·자구…… 저희가 상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데 이 규정 자체가 교실이 마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이렇게 자구를 하게 된 것은 아주 예외적이지만 현재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최적의 대안을 만든 게 이렇게 됐는데요.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만일 ‘출입구’, ‘운동장’, ‘외진 곳’ 이렇게 그거를 문구로 넣는 건

팬찮은데 교실을 여기서 넣으면서 제외한다고는 돼 있지만 운영위 심의를 거친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돼 버리면 교실이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차관님, 교육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이 기득권과 특권층에 유리하게, 특히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불만이 많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 결과가 뭐니까? 기득권·특권층에 유리한 교육 하나까, 오늘 보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나와 가지고요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똑바로 하세요. 아이들 똑바로 키워야 돼요.

아까 저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 초등교육법 관련해서 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윤석열 정부 동안에 보니까 학교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줄였고 학교 보안관 시스템도 많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지 사건 하나 터지면 CCTV나 달고 하는 이런 미온적인 대책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해 주시고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지방대학 관련 법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봤어요. 지역균형인재 육성 당연하지요. 그런데 인재를 육성하면 뭐 합니까, 취업할 데가 없는데? 저는 교육부가 전형적인 접근들을 해야 된다. 교육부끼리 앉아 가지고 지방대학 방안…… 지방대학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최혁진 위원 특히 국공립대학이야 통합시켜 나가면서 혁신하고 있지만 사립대학 어떻게 할 겁니까, 한 280개 되는데? 사립대학 그냥 내버려둬서 망하면 폐기 처리한다? 문제는 대학이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지요. 서남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동네가. 남원이 폭망을 했어요. 대학이 망하는 게 대학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정부 부처들이 다부처 합동으로 모여 가지고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하버드·스탠퍼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대학들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학 안에? 고령자 돌봄 아파트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니어 세대 어떻게 케어할 거냐, 대학 안에 갖다 놓으면 대학에 있는 인프라로 케어할 수 있고 인재 육성하고, 저런 데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 혁신도시에 지금 부지가 없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못 한다는 데 있으면 지방대학 안에 공공기관 설립하면 되잖아요. 뭘 부지가 없어요? 그거 여기 지금 복지부도 나와 있는데 교육부·복지부·국토부 앉아 가지고 2시간만 토의하면 대한민국, 저런 거 못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혁신해서 어떤 점수 받으면

도와주겠다? 돈이 다 없는 대학들이 무슨 수로 혁신을 해요? 그건 너무 미온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방안이라고 나오는 게 결국 매번 반복되는 균형인재 육성하겠다는, 백날 해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누가 학생들이 갑니까? 4년을 다녀도 취업도 안 되는데.

저는 다음번에는 저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교육부가 세우고 여러 부처 사람들 모아 놓고 앉아 가지고 지방대학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이 사느냐로 접근을 해야 돼요. 대학이 망하면 지역이 죽지 않습니까? 대학까지 망하면 지역에는 인재가 없어요. 그렇게 좀 접근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위원님,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본 정신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체와 대학이 협업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그런 정신을 담아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차관님, 지금 의사일정 6항·7항 보니까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을 하면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부 다 그냥 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복지부에서 편성하고 저희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인 관리나 시설 예산 이런 거를 편성했는데요. 앞으로는 복지부로 일원화되게 됩니다.

○**조배숙 위원** 이제 예산을 전부 다 복지부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대학 육성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지방대학이 상당히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정원이 안 차요. 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배숙 위원** 아시고, 그래서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보면 대개 중국에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어학연수로 1년 단위로도 오고요. 그런데 실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와 가지고 취업을, 그러니까 인근에 알바 형식으로 다 지금 취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역에서는 대학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 인력도 쓰는 이런,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주민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방대학이 존립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대학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하지만 사립대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골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경기도청에서 보니까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저출산 부분 그리고 다문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저께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이 자꾸 의제 안에 있는 내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의제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 선례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의사진행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본인들이 과거에, 민주당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돌아보면서 이 부분 좀.....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본회의장의 5분발언을 통해서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지금 대체토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오늘 얘기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 정도로 대체토론을 마치시고.....

○신동욱 위원 저 토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법률안을 가결하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토론하시겠다는 분들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토론 있다니까요.

○신동욱 위원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6·7항은 해 드리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한 80건을 해야 되니까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그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고 정보 주체의 무엇 때문에 그런 항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 법안은 너무 거칠어요. 그냥 교실을 겨냥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곽규택 위원 교실이 제외되어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많이 피해 가는 거지만.....

- 곽규택 위원** 교실이 제외되어 있다니까요.
- 박은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해 버려 가지고……
- 신동욱 위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꾸?
- 나경원 위원** 아니, 여야가 합의한 것을 법사위에서……
-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 확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방책·대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경원 위원** 그러면 2소위로 보내 주세요.
- 이성윤 위원** 법사위 전체위에서 상의해야지 무슨 2소위예요, 다 관심 있는데.
- 위원장 추미애** 너무 쉽게 가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 송석준 위원** 2소위로 회부시켜 주시고 2소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 나경원 위원** 2소위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2소위로 보내 주십시오. 이것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맹사업법도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추미애**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나머지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분한 맞춤형화장품만 판매하는 업소에는 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동업자조합, 식품산업협회 등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해 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수정 사항이 있는데 먼저 좀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추미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은경 복지부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5항과 관련하여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이 회의장에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준형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우선 장관님 말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법안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아동복지법 관련 수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이견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6항을 수정하여 의무였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를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9조의9 등을 수정하여 사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료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자료 제공 규정을 삭제하고 사례 분석을 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10을 수정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관련해서 면담·자료요청의 대상에서 법원과 그 직원을 삭제하였으며 면담과 자료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11을 수정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이양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을 대안으로 반영하여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의사일정 제15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관련 수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27조(세입) 조항에 기존 제29조의 내용 중 기재부와 합의된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및 수입담배 관세 항목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근거를 반영함으로써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을 대안에 반영하여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법안 내용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국민연금이 정부하고 통화 스와프 연장 문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신동욱 위원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외환 방어에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나온 이후에 이 연장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좀 됐는데, 원래 이 취지가 뭘지는 아시지요? 이게 우리 연금에서 해외 자산 사들일 때 현물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 가지고 사자 이게 원래 취지인데 지금은 그 우려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외환보유고가 어려워질 때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팔아 가지고 우리 달러 좀 조달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국민연금이 외화의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기금 운용을 할 때 환헤지에 대한 부분이 라거나 아니면 한국은행하고 외화 스와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현재 실무적인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신동욱 위원 혹시라도 환율 방어나 이런 부분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어떤 단서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원칙으로, 독립적인 운영과 수익성·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그런 기금 운용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환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왜 복지부 장관을 그 회의에 참석시켰느냐,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는지, 장관님이 연금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고 복지부 내에서도 이게 잘못하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말씀 잘 알겠고요. 또 연금의 수익성 차원에서도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저희도 고려해야 될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혁진 위원, 박은정 위원님, 저에 대한 문제 제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에 대한 말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공격도 좋으시고 품격 없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제가 무슨, 우리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라 했든지 이런 것들은 기소장에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 어떤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데에 대한 검찰의 평가가 있을 뿐인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공소장에 있어요, 공소장에.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보세요.

○박은정 위원 기소장에 없다니요? 그리고 기소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공소장이예요. 공소장에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면책특권 뒤에 숨은 게 아니고 저는 연합뉴스·중앙일보에 기사 나온 것 그대로 읽어 드린 거고요. 만약에 신동욱 위원님이 불만하시면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왜 면책특권 뒤에 숨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오늘 보니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이 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법안이기는 한데 이게 과연 실행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속초의료원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혁진 위원 속초의료원이 의료원장…… 구하러 그랬는데 계속 공모를 해도 의사들이 오지 않았고 급기야는 연봉 4억 이상을 한다고 공모해서 한 사람 채용했는데, 한 명이 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혁진 위원 그랬던 전례가 있어서 이게 지금 특별법안 만드는 것만으로 과연 지역 내 필수의료의가 충족될 수 있겠는가. 수도권의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수도권을 안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방의대 나온 친구들도 대부분 다 수도권에 가서 의료인으로 생활하는 걸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지방혁신도시 관련 토론회를 갔더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 거기에 온 자치단체장들이 다 뭐냐면 지역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혼자 와서 주말부부 하면서 가족은 전부 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만든 기본적인 성과들이 반쪽밖에 안 나고 있다, 그 반쪽만 해도 대단한 거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이 다 똑같은데 교육·문화·의료·복지·주거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소위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하니까 지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차관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부처 간 합동으로 특별법도 만들어지는 마당에, 예를 들면 어쨌든지 간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필수의료 거점으로 만들어서…… 그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주 여건이 일정하게는 조금 갖추어져 있지만 이왕에 관계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가지고 의료인들이 가서, 젊은 의사들이 가서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을 먼저, 시범도시 같은 경우들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의, 군 단위 지역까지 의료 문제 지원체계들을 구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장관님, 저는 사실 뭐가 걱정이나면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할까 봐,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사들을 양성하겠지만 그것은 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뽑아서 의사가 될 때까지 10년은 걸릴 거니까? 그사이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이?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있는, 더 강화해서 의료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을 거점화하고 교통망을 해소한다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아직까지도 우리 부처들이 보면 다 부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법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실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추미애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역의료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그런 필수의료 플러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고요. 여기에는 진료권도 결정하고 또 뭔가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법만으로는 어렵고 현재 같이, 오늘 통과된 국립대병원법이 국립대가 지역의 특화된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지역의사제 양성 이 법을 이미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 의사의 계약형 또는 양성하는 지역의사 같은 인력 그리고 이 법에 포함된 특별회계같이 회계·재정·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주신 대로 의료만 보지 않고 지역 전체의 정주 여건, 산업적인 시너지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광규택 위원님.

○광규택 위원 의안 15항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는 전면 삭제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지원 제도만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미 계약형과 복무형이 지역의사제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전반적인 계약형 지역의사제 정도의 개념만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광규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지방에 있는 대도시조차도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빅5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다 서울 와 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조금 더 키우고 발전시킨다면 그런 부분들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이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 안에도 국립대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국립대 측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하고 감독하고 규제만 하려고 하지 어떤 발전을 위한 지원이나 청사진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부산, 대구 또 지역에 있는 이런 국립대병원을 다 지역의 정말 명실상부한 거점병원으로 키울 수 있는 청사진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 관련된 건 교육부가 지원하고 진료 관련된 것만 복지부가 하다 보니 이게 분산돼서 종합적인 지원이라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준 국립대병원 이관법에 따라서 복지부가 그걸 좀 총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우려가 되는 게 부산에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있어요. 부산대병원이 있는데 원래 이게 병동 문제, 시설 문제 이런 게 워낙 낙후돼 가지고…… 글로벌 허브 메디컬 사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예타 중이었거든요. 예타 중이었는데, 지금 소관 부처가 중간에 바뀌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 예타에 혹시 준비가 좀 소홀하거나 악영향을 미칠까 봐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소관 부처가 옮겼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장관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국립대병원 육성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아까 장관님하고 개회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언론보도 나온 걸 보면 ‘(단독)건강도시 1위가 경기도 과천’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도된 바에 의하면 2등은 강남구, 3등 서초구, 4등 송파구, 5등 성남 분당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는 기사 내용을 보면 좋은 병원이 있는 곳이에요. 또 시설이 좋아서 운동하기가 좋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이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좀 육성시켜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면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시골 병원에서 안 되면 다 거점에 있는 국립대학 부속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취약지역 병원, 12월 중에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거기에는 경상북도 안동, 강원도, 전국 취약지역 병원들의 협회예요. 그러니까 꼭 좀 만나서서 그러한 애로사항, 즉 의사가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는 데 도와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윗단계의 병원들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포괄 2차 병원 같은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지원 위원 거기에도 분류가 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75개 정도가.

○박지원 위원 그분들도 만나 보니까 지정만 해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다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니요, 연간 한 80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수가로 지원하고 일부는 성과평가를 해서 아마 성과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지원 예정입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지역 89곳을 선정해 가지고 연간 70억, 80억, 12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거점국립대학이나 대형 병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의료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의사 확보예요. 저희 조카들도 다 의사인데 하나도 시골로 안 내려가요. 제가 사정을 해도 안 내려가요. 그러한 것이 왜 발생하는가 잘 생각해서 우선 의료인의 농어촌 공급을 원활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될 법에 있는 특별회계가 아마 지자체에서 의료취약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자체는요, 예를 들면 그러한 지원이 필요 없는 강남구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이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세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심지어 교육부도 그렇지만 정부 공모사업에도 지방비를 이삼십 프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공모를 못 해요, 그 돈이 없으니까. 이런 현실을 보시라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의료취약지역이 아무래도 좀 더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은경 장관님과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16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공지능 개발·활용 등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하고 공공데이터 등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모태투자조합의 활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에 인공지능 관련 예산의 심의 의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각 기관의 권한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안 제22조의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학·기업 등과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및 기재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른 부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대학·기업 등과의 연구소 공동설립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정의견과 그 밖의 개정 대상 조문 간 시행일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의 자구 수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차관님, 제가 과기부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아무래도 지금 국가전략사업이니까 AI 관련된 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고려는 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아주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AI의 격차 문제, 디지털 격차에 이어서 AI 격차까지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최혁진 위원** 실제로 계층상의 격차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고령 세대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앞에서 절절매는 모습들, 키오스크 변동하는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더 심하게는 저는 지역 간 격차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자료들을 계속 뽑아 봤더니 주요 테크기업 36곳이 전부 다 서울, 성남 판교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국가 관련 R&D 예산 70% 이상이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이 상태로 한 사오 년 지나고 나면 지금도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지역의 소멸 문제가 벼랑 끝에 섰다라고 하는데 AI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지역은 밥 먹고 살길이 없어지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기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디지털 기술이 나 AI 기술은 사실 장소의 제약을 안 받지 않습니까? 장소 제약이 없어서 강점이 있는 건데, 아마 차관님 아시겠지만 미국 대형 병원들이 하는 나이트워크(nightwork) 사업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최혁진 위원** 인도하고 미국이 시차가 정반대니까 밤에 MRI 판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도가 낮 시간에 다 해결해 주고 그로 인해서 의료진의 과로도 줄이고 업무도 효율화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것 의료비용 절감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소의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주요 정부 인프라나 투자 인프라들이 수도권에 집중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거기의 핵심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으나 KTX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있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부처와 협력해서 추가 투자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때 수도권으로 다 과밀화시켜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옮기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전격적인 공공과 민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려면 지방에 대한 투자계획들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호합니다.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관련된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

고 있긴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어서 저걸로 과연 우리 지방정부들이, 지역이, 지역 산업단지들이 AI를 포함한 전략산업화에서 적극적으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에요.

차관님,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과기부도 가져야지 이것은 행안부의 일이다, 국토부의 일이다 이렇게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법안 관련해서도 관련된 전략 수립 내용 있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AI를 좀 더 고도화시키려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역의 조선이라든지 특별한 광이라든지 지역의 소재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산업과 AI를 접목해서 저희들이 AX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AI 전체 예산이 3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위원님 그런 우려사항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혁진 위원** 저는 지역에 거점을 만드는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투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낮겠지요, 수도권에 집중이 될 테고. 그렇게 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될 거고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과기부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차관님, AI 컨트롤타워를 국가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한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현재 AI 인공지능위원회를 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을 하고요, 정부조직법상에서도 과기정통부를 장관급에서 부총리 부처로 격상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송석준 위원** 지난번에 아리랑 9호 발사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송석준 위원** 그것을 과방위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아리랑 9호는 우주청 소관이기는 한데 그런 사항들을 챙겨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챙겨 보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거기서 얻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된 게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아마 우주청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주청에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2012년도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할 때 국토부의 R&D 예산을 따내서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

요즘 통상현안 중에 고해상도 상세지도 미국 반출, 구글 관련해서 그게 이슈가 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구글을 능가하는 한국의 공간정보, 3D 지도를 비롯한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정보산업을 우리가 선도하자. 해외 정보는 우리가 구글 위성 체계에 많이 의존하고 독자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30cm 해상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남의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타워라는 게 뭐니까? 부처 간에 협업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서 서로 예산 중복을, 낭비를 막고 성과물을 공유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관련 산업을 키워야 되고.

AI가 그런 것 아닙니까?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막상 정부 입장에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갖고 서로 할거적인 그런 행태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략’으로 이름 바꾸면 뭐 합니까? 부처 간에 서로 칸막이를 없애서 정말 유기적으로 민간하고 소통을 잘하고 부처 간에도 거의 한 부처처럼 유관 부처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성을 띄워서 공간정보 수집하면 뭐 합니까? 수집한 걸 국가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도와줘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실효적인, 말로만 위원회를 어떻게 한다, 강화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부처 칸막이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전체적인 정부 협업에 의한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 얘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공간정보 관련해서 AI전략위원회에서도 관장을 하지만 우주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우주위원회라고 또 다른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국가우주위원회의, 부처 간의 협력과 그러한 기능을 좀 더 강화

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위원장 추미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초·중등’이라는 것은 삭제를 하시고 6의2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격차 해소가 지방에 대한 격차 해소도 필요하지만 또한 세대 간의 격차 해소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노령 세대, 중고령 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교육 지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의견에……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초·중등’ 이 세 글자를 빼고 그냥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혁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2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32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외교부, 통일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중 북한에 납북된 전신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2조는 전신납북자가족 단체 중 현재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 이 법에 따른 단체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경과조치를 두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이 개정안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현행법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이 법에 따른 단체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는 것에서 30일이 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이 적용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하게 되는 특임공관장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하는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파악하여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는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유상협력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별도 파악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보고는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유상협력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므로 안 제23조제3항에서 개정안처럼 유상협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40%를 차지하는 유상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보고를 안 제23조제3항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규정의 신설 취지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유상협력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9항·제22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현 외교부장관님, 김남중 통일부차관님,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조현 장관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 지금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한 몇 개나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6·25 전시납북자는 6·25전쟁납북인가족협의회 단체 하나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납북됐거나 북한에 억류 중인 그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전후납북자하고 억류……

○송석준 위원 전후 있고 전시가 있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송석준 위원 전후납북자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고 있습니다. 516명이 지금 납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굉장히 많은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외국 언론인이 물어보니까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사실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대표로서 특히 우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가원수가 그것은 가장 소상히, 기본적인 인식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현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송석준 위원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저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님이 대통령 보필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전후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각국에 국제 전쟁 발발하는 게 다 그런…… 외국에 억류 중인, 적군에 의해서 피랍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외국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국민을 구하는 건 국가의 기본 기능이고 또 국가원수의 의무예요. 그런데 실태 관계를 전혀 모르고, 그것은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요새, 오늘 언론에서 나왔지요. 백 경정 마약 수사 그런 것은 직접 ‘수사단에 이 사람을 넣어라’, 마치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해서……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에는 쉽게 넘어가고 정작 알아야 될 건 모르고.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재판 공소유지 중인 검사들, 법정에서 자기의 정상적인 다투는 수단인데 퇴정했다고 해서 ‘감찰하고 수사하라’ 그런 구체적 지시를 하고.

또 뭐요? 요새 통일교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종교단체 해산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원수로서 이런 것 해도 됩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자유가 있고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통령이 알 건 모르고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간섭하고 또 무리한 지시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답변 곤란하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장관님, 법안과 무관한 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석준 위원 김경협 청장님, 한말씀만 해 주세요, 오랜만에 얼굴 뵙는데.

○위원장 추미애 지금 현안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시간이니까 장관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하여간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측을 빗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격려하고 웃어 드렸고 박수를 보냈고 오랜만에 질의하시라고 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발언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따 고유법 심의할 때의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에서 종교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려 했는데 그걸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용가리 통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에 사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안 되는 뭘 얘기를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법안과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서 방해하더라도 장관님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기획재정부 법안 심의할 때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된 얘기를 강하게 기재부를 질타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ODA 사업이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이 따로따로 제각각 놀 수가 있습니까? 기재부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거부했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외교부장관님 아시겠지만 주요 선진국 중에 ODA 사업 하면서 유·무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건 내 주머니니까 절대 공유할 수 없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제삼국에 산업화를 지원한다 그래도 인재 개발·육성이나 학교 지어 주는 것은 무상이고 거기에 산업단지 만들 때 투자는 유상이잖아요. 그게 일관되고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무슨 짓을 합니까?

당연히 외교부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유상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고 국조실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무상 사업과 유상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나게 해야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기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법안은 이렇게 가더라도요 장관님 이것 절대 외교부가 여기서 물려서시면 안 된다고

고 생각을 하고 국조실과 함께, 저희 법사위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

기재부도 대한민국국민의 돈을 가지고 ODA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머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하게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외교부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이렇게 안 하고 덴마크도 이렇게 안 하고, ODA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을 국무회의 할 때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때도 말씀드려서 기재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유·무상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법안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재외동포청장님, 재외동포청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시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많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가서 뵈고 그러다 보면…… 우선 외국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실은 재외동포청장님을 찾아올 정도의 사람들이면 상당히 위상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나름대로 현지 국가에서 영향력도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는 동포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행사할 때 많이 만났는데요. 말도 설고 물도 설고 낮도 선 곳에서 어마어마한 위상을 잡고 그래서 세계한인회 회장들이 되어서 함께 국가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위상이 높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잘 챙겨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 뵈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투표 한번 하러 오려고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가야 된다’, ‘중국은 투표소 가려면 몇 날 며칠 달려야 된다’, ‘같이 버스 타고 오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서영교 위원** 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는 그동안 해 왔는데요, 투표소를 몇 개 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런데 지금도 아직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영교 위원** 투표소를 몇 개 늘린다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먼 지역에 투표소 몇 개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서. 전부 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편투표제잖아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우선 우편투표제나 현재 전자투표제 이것도 지금……

○서영교 위원 전자투표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우편투표제를
를……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서영교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편투표제를 여야가 어떻든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하
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지금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
습니다.

○서영교 위원 강력하게 합의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열심히 좀 하세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행안위원장을 했었고 그때도 여야가 다 합
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틀렸어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
표 때문에 안 됐거든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하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도
찬성했었어요. 그런데 또 안 됐기 때문에 그것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라시아 쪽에 우리나라 독립군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독립군의 자손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배우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예를 보니까 1명 정도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살아야 해
요. 여기 와서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터전은 거기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데 오는 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짧게 해 달라고, 우윤근 전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이 지금 한민족 관계 기관의 일을 해 주시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더라고
요. 그게 법사위 법이라서 저희가 통과시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독립유공자의 후손
들…… 중국에 있는 분들은 배우자가 많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유라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국적을 회복하게, 이중국적이 되
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살펴보시고 일하신 흔적을 답변으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애써 주십시
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애써 일하시는데, 제가 가서 보면서도 애쓰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애써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외교부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잠깐만요.

외교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에서 유상협력 사업을 제외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봤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사업 압박을 했다는 필리핀 지원 사업 그것은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한 경우처럼 유상을 제외해 버리면 이런 필리핀 사업 압박한 권성동 케이스 같은 경우가 제대로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체크가 될까요?

○신동욱 위원 법안하고 관계없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최혁진 위원 법안에 관련이 깊습니다.

○신동욱 위원 권성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최혁진 위원 관련이 깊지요.

○신동욱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장관님.

○위원장 추미애 유상 사업을 포함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본인이 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신동욱 위원 시켜 주면 할게요. 시켜 주세요.

○박은정 위원 본인이 위원장 자격도 안 되면서 왜 이래라저래라 해요?

○신동욱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법안하고 관계없는 것.

○최혁진 위원 특검 수사부터 받으세요.

○위원장 추미애 답변하십시오.

위원들이 소란을 피워도 이건 위원장의 질의 방해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유상 사업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아까 최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부처 간에 서로 이견이 있고……

○위원장 추미애 어느 부처가 그렇니까? 기재부가 그렇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기재부는 이걸……

○위원장 추미애 기재부는 왜 그렇니까? 권성동 필리핀 사업 압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게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EDCF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의 특수성에 따라서……

○위원장 추미애 어쨌든 계속 보고를 해서 여러 투명성을 높이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굳이 유상 사업을 제외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다고 믿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사업 과정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또 수출입 은행마저도 권력이 갑자기 압력을 넣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공론화하는, 그게 국민 혈세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하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보고를 하는데 유상 사업 포함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여기……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외교부는 유상 사업 포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저희는 포함해야 되지만 안 되더라도 일단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글썄요, 유상 사업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교부가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힘이 없습니다, 소신이 아니라.

○곽규택 위원 외교부장관이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박지원 위원 장관,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해하겠습니다.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통일부에서 차관님이 나오셨는데 정동영 장관이 안 나온 이유가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참석한다고 안 나왔거든요.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하루 종일 통일부장관이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오후에 국회에 나올 시간이 그게 안 되나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다 모든 부처가 차관들이 나오셨는데, 물론 차관들께서 업무 전문성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안 심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차관들이 나오는 것이 관례화됐다, 이것은 법사위 운영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법사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북한에 납북돼 있는 우리 국민 6명 그것 담당하는 부처가 외교부입니까, 통일부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입니다.

○곽규택 위원 통일부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곽규택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동안 남북회담을 할 때 북쪽에 우리……

○곽규택 위원 남북회담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난 정부에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억류자 관련해서……

○**곽규택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라도 똑바로 하세요.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한테, 외신 기자한테 그렇게 망신당해서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 힘이 없으신 건 좋으신데요 일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대미 관세협상 때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

○**곽규택 위원** 제가 보기에선 외교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통령께서 산자부장관만 칭찬하시고 외교부는 아예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오늘 미국의 UC버클리 대학교수, 전에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뭐라 했냐 하면 ‘미국에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이 중에서 조선 분야 말고 2000억 달러는 대미 조공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국의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경제학 교수가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것 때문에 이제는 환율 하락,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원했던 통화스와프 체결 안 된 것 이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시 협상할 때 외교부나 우리나라 협상단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요청한 것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 스와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테크니컬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주장을 안 하셨겠지요. 주장하신 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맞습니다. 우리 환의 안정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대책회의 때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곽규택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금 환율 문제 심각합니다. 물론 외교부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대미 협상에서 그 문제가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외교부도 당연히 신경을 쫓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은 못 했지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 그만하시고……

○**나경원 위원** 저 외교부장관하고 하나씩 좀……

○**위원장 추미애** 다음에 또 토론할 기회 드릴게요.

○**나경원 위원** 아니, 외교부장관 잘 안 나오시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의결 들어가시지요. 갈 길이 바쁩니다. 이따가 고유법안도 해야 되고요. 고유법안에 또 할 얘기 많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차관들만 나오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아니, 어떻게 2소위에는 보내시지도 않으면서 법안을 갖다가 얼렁얼렁

하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욱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이의 자꾸 묻지 마시고.

○나경원 위원 문제 되는 장차관들을 빨리빨리 보내느라고 급하니까 의회가 의회 역할을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제2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조현 장관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힘이 돼 드리도록 하고, 그 해당 부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표목 아래 3항에 있어서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괄호 속에 있는 부분은 삭제합니다. ‘유상협력은 제외한다’라는 것을 삭제하고—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해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제21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 장관님, 김남중 차관님, 김경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김용민 간사님, 위원장이 이렇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꾸 막 고쳐도 되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동의 구했잖아요, 지금.

○위원장 추미애 체계·자구 심사잖아요.

○신동욱 위원 자구 심사지만 그래도 여야 간에 얘기가 있어야지 위원장이 그냥 혼자 막 고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 맞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혼자서가 아니고 다 물어봤잖아요.

○신동욱 위원 국회 맞습니까, 이것?

○김용민 위원 이의제기를 해 주시면 토론을 하는 거지. 안 하셨으니까……

○신동욱 위원 이의제기, 발언권을 안 줬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발언권 드려도 다른 정치 얘기만 하셨잖아요.

○신동욱 위원 무슨 정치 얘기만 해요?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도.

○위원장 추미애 속기록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신동욱 위원 아니, 무슨…… 우리 여기 왜 앉혀 놓은 거예요, 도대체?

2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2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27.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42)
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16시59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국방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통적으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장보장 및 학업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이에 더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두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지, 이 법 시행 당시의 비상근 예비군 중 훈련 소집기간이 연간 30일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시험법 등 입법례에서도 학위 수여

가 예정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전직지원교육 위탁업무 종사자가 사대보험 등 민감정보·고유식별 정보를 취급하게 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개정안은 비밀 누설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벌칙 등 제재 조치가 미흡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 종사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선임 장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를 항고심사위원회의 예외적 구성 사유로 구성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임 장교 4명과 군법무관 1명으로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므로 예외적 구성요건을 '5명에 미달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의사일정 제3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통적으로 방위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기술 분야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에 더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두 개정안은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자를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국적자를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23항, 24항, 25항, 27항 및 제33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규백 국방장관님, 홍소영 병무청장님,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협력 관련한 한-페루 고위급 면담으로 인해 본부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곽규택 위원** 최근에 국방부에서 장성에 대해서 징계를 근신으로 했는데 국무총리가 말 한마디 해 가지고 강등으로 바뀐 사례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장성에 대한 징계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장성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는 국방부에 있는데 총리께서 정부조직법상 취소 처분을 내리면 재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재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된 정도를 보통 하향하는 것 정도로 해 가지고 할 때 국무총리가 관여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관여해 가지고 징계 결정 사항을 번복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당초 징계를 내릴 때 결정보다는 그 이후에, 징계를 내린 그 익일에 다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과실로 판단해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 다른 사유라는 것은 저는 언론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건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한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번에 3개 특검이 진행 중에 있고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에서도 지난 비상계엄 관련된 사건들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거의 종료될……

○**곽규택 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특검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 자체적인 특별한 수사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던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내란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집중 점검……

○**곽규택 위원** 장관님, 법원에서도 지금 내란 사건이라고 안 하고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래서 미처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처로 이관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재수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통상적인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이지 특별한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방부 자체에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 자체에서 지금 특별조사본부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전에 국조특위 하실 때 위원장으로서 진실은 밝혀야겠지만 군에 대해서 정상적인 명령 계통에 의해서 수행을 한 그런 군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게 당시 국방부장관님의 입장이셨는데요. 지금 국방부장관님 되신 다음에 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본인들이 자진신고 하거나 또 본인에 대해서 그런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먼저 접수를 하고 스스로 접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을 할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국방장관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 내 내란 세력의 척결은, 이게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특검이 종료되더라도 지금 소신대로 말씀하신 그러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역사적으로 봤을 때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5·18의 경험을 비춰 보면 지난 과오에 대한 그런 성찰과 반성, 근절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계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장은 대개 군단장, 사단장, 지휘관들이 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장이 따로 있고요. 예전에는 각 사단장이나 지휘관들이 마지막 종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 언론보도에 내란 재판의 재판장들이 전부 바뀐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법원에서는 매년 12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유임도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은 유임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님.

○**병무청장 홍소영** 예, 병무청장입니다.

○**박지원 위원** 축하합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여성으로서 최초의 병무청장이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력을 보니까 군대는 안 가셨고 대학 졸업하고 병무청에서 징병 업무를 전문으로 하셨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대 수가 줄어드니까 최근에 독일에서도 여성 징병도 한다,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별 구분 없이 징병제로 하고 있잖아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혹시 홍소영 병무청장이 오심으로써 여성 징병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무청장 홍소영 아직 거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요. 우선 여성 징병제가 되면 사회적 합의 필요하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여성들이 복무할 수 있는 군 환경이, 기반이 먼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신병 이런 것으로 볼 때 여성 징병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국방부장관님,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국방부 고위직 출신인 마이클 쿨터를 해외사업 CEO로 선임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은정 위원 국내 방산업체 사상 최초로 외국인을 대표로 임명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의사일정 3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대안)에서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서 작성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정도로 아마 외국인이, 복수국적자가 우리 방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한 규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전 관리장치가 전혀 없고 기술 유출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은정 위원 그리고 사후 대응 외에는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초로 외국인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규제하고 임원이 선임되거나 소유구조 단계에서 사전통제를 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의원 시절에 이런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의 이 31항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는 관리계획서 작성하고 이행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어떤지 장관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위사업은 국가전략사업이고 기술 유출이 방위사업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해외 임원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근, 얼마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 사임을 했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사임을 했고 또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고, 일반 평직원 연구개발자는 있는데 임원 이상 급은 지금 현재 우리 방산기업에 1명도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잘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는 임원이 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조금 더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은 해외 국적을 가진 사람이 방산의 오너가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적으로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장관님, 지난 11월 20일 날 이천시에서 첨단방산드론 페스티벌 개최됐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11월 20일?

○송석준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방위산업에서 요즘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외국의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도 보면 첨단 드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한 어떤 조직이나 정책 구상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드론이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게임체인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도 50만 드론전사 양성 차원에서 드론을 기존의 중국산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산화를 100% 할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약 5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드론이라는 것이 하늘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공 관련된 공역체계 이런 것에 대한 서로의 배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기관하고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천시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특전사라든가 7군단, 항공사 이런 국가의 중요 전략부대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토부라든가 군부대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어쩌면 가장 효율적으로 드론산업을 거기서 테스트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해 보는 그런 훈련, 적용을 다용도로 하는 그런 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구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산업으로도 중요한 드론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송석준 위원 그리고 용산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청와대로 다시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이용할 것이며 여러 가지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대책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금년 안에 이전하면 국방부가 아마 그 부처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비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책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예.

청와대로 들어가시면 바로 집무 보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단 국방부 청사의 용도에 맞게 아마 재시설과 수리, 특히 통신 보안 시설 이런 걸 다시 한번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장관님, 최근에 한미 팩트시트 그걸 보면 원자력 핵잠수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부에서 거기에 뭐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것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팩트시트는 외교부, 국방부, 산자부, 원자력위원회, 다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주 부처기 때문에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서 핵잠수함 추진의 장소는 어디로 정해졌다는가 그런 것까지 결정이 됐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여러 가지 시설과 인력·기술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한국, 지금 하고 있는 모처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쪽의 바람인데 미국하고 협상에서 그것이 관철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소영 병무청장님, 아까 여성 징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여성 징병이 나왔는데, 물론 우리도 국민이니까 여성도 징병의무를 져야 된다 하면 질 수 있는데 그런데 병역의무의 경우에는 실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실전을 생각할 때 우리 여성들이 과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하지만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

성 군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맞춰서 여성 군인을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붙으면, 전투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서…… 그래서 저는 여성 징집의 경우에는 이게 뭔가 기본적인, 굉장히 큰 문제고 어떤 병과나 이런 부분을 좀 한정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회적 합의가 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아까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도 질의는 하셨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핵추진 잠수함.

○**나경원 위원** 저희가 팩트시트를 아무리 읽어 봐도 사실은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건조 장소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명 대통령하고 말씀이 다르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논의에 국방부장관도 아예 제외되어 있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핵추진 잠수함?

○**국방부장관 안규백** 핵추진 잠수함은 지금 우리 실무 차원에서, 오늘 국방부에서 미국 워싱턴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경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한국에 하는 것으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주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은 안 됐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미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국에서 그걸 용인을, 그렇게 한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핵잠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장관께서는 논의가 거의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인지 지금은 나온 게 없지만 기존에 나온 것을 보면 미국에서 하겠다고 애

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핵잠의 크기는 보안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약 5000t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5000t급 이상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톤수라고 말씀을……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5000t급이 국방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예전,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도 계속 그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여러가지를 보면 그것보다는 좀 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5000t급 이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합니다.

○나경원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원자력협정 재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건 외교부장관 주관이기는 하지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난번에도 외교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개의 트랙으로,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이 2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 저희가 팩트시트를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해준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원문을 안 가져와서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못 드리겠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위원님, 모든 팩트시트의 조문에, 합의문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합의하면 이제 실무 차원에서, 워킹그룹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경원 위원 그런데 그 합의의 내용이 우리가 하는 것을 그냥 용인해 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합의가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2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거기 50조의3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의 2항을 보시면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조건을 달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기술이 민감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기술별로 보안 등급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영향’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은 좀, 아까 박은정 위원께서 질의하

셨는데 그 단순한 ‘영향’ 이것은 되게 허술해 보여요. 이것으로 무슨 산업기술 보호가 되겠습니까? 기간 30일도 너무 짧아요. 그냥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기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 이게 원래 60일이었는데 국방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30일로 줄인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시 60일로 늘립시다. 그것 무슨 서류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저는 이것 한 몇 달 정도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민감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분류도 좀 해 봤는지 알 수도 없고, 우선 준비를 갖추셔야 되고요. 미국 같으면 규제가 굉장히 엄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보고 민감국가라 해 가지고 무슨 기술 수출 통제도 하겠다, 이렇게 판판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중국적자 받아 들여 가지고 그냥 서류로 왔다 갔다 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원래 원안대로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예 한 90일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너무 길면 그러니까요, 60일로 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60일로 하시지요, 뭐.

○박지원 위원 거기 소위에서 얘기하지 여기 와서, 아무리 우리가 장관 파라고 해도……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 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추미애 여야가 공히 60일 원안 복귀로.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대체토론을 다 마치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제27항부터 제3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제28항,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백 장관님, 홍소영 청장님, 방극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 저 끝나기 전에 한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추미애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성 징병제 관련하여, 사실 여성 징병제는 병역법의 근간을 흔들고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로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 시일 내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오늘 청장님 그 답변이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3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30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은정 전문위원께서는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4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35항 및 제36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 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징벌적 차원에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몇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환수하는 과징금 규정은 일반적인 입법례는 5배 이하 범위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50배 이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입법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감면은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특수한 사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특검법 등 일부 법률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원칙적으로 유죄 협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사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들에 대해 법무부는 형벌 감면은 자본시장법, 국가보안법, 김건희 특검법 등 보호법익이 매우 중한 소수의 법률에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8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24조제1항제4호에서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은 그 의미가 저작권법이나 그 유사 입법례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인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인터넷 사이트 등’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을 예시로 기재하는 것으로 법문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법무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제3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봤는데요. 지금 입장권 부정판매 한 경우에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이것이 다른 과징금의 경우에는 보통 5배 이하다, 그래서 이게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입장권이라고 하는 게 단가에 비해서, 실제 가격에 비해서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서는 50배 이하의 과징금 정도로 규정을 하는 것이 징벌로서의 효과가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자진신고 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이 규정은 전문위원의 지적처럼 굉장히 중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 규정을 여기까지 두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기본적으로 저는 문체위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기를 바

랍니다만 법체계상 우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 재량으로 형의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신다면 조항 삭제에도 이견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전문위원님, 형을 감면하는 이 규정이 형사벌을 감면하는 규정인가요, 아니면 과징금을 감면하는 규정인가요?

○**전문위원 이은정** 형사벌을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곽규택 위원** 형사벌을?

○**전문위원 이은정** 예.

○**곽규택 위원** 만약에 이게 정 필요하다면 형사벌은 아니더라도 과징금 정도의, 혹시라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유사 조항이 있나요? 검토가 안 됐나요?

○**전문위원 이은정** 과징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없어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유사 입법례는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유사 입법례는 없고?

○**전문위원 이은정** 예.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냥 제 생각에는 자진신고자 형의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문체부장관님, 저는 일단 저작권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하고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이게 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 예술가, 1인 창작자들 같은 경우가 이런 데에 많이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 문화 예술 기업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팀도 있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1인 창작자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기회 보장 안에 고용보험이라든가 창작준비금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개정안 2조에 보니까 장관님께서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진계획 할 때 구체성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민들이 가끔 소위 열받는 경우가 뭐냐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는데 정작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법이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쪽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이게 고소·고발하면 이기기가 쉽지 않대요. 진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발해서 지면 고발했으니까 변호사 비용 들어

가는데 지나까 상대방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가슴 쓸어내리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아무래도 법률을 다루는 전문적인 부처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왕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법무부 등하고 협력을 하셔서 가지고 이 저작권법을 통한 법률구조 시스템을 강화해서 1인 창작자나 청년예술가 등 같은 경우에 송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한다면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보호가 있을 테고 이차적으로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손해배상들을 받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분들이 법률적 접근에 대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전한 보완장치들을 만들어 가셔서 실행계획 안에, 이 법 개정의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의 우리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 현장에서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도 송사 지원 체계는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법정 비용도 저희가 바꾸쳐 같은 형태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장관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부정 티켓 거래를 금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됐는데 국민체육이라는 것은 진짜 최고의 복지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진흥 사업을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송석준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번에 기금 조정하면서 제가……

○송석준 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송석준 위원 좀 열심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송석준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송석준 위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다양한 생활체육이나 혹은 경기단체·체육회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고 또 그것이 국민들 건강 증진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그게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낙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그런 지역으로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고 같이 활용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각별한 연구를 해 주시고 저한테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장관님, 요새 통일교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 국무위원 모 장관님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어서 지금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단체 해산에 관한 권한은 어디서 갖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지금 해산, 허가 취소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문체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지금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시고,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런 지시가 위헌적이고, 속된 말로 지금 종교계가 발칵 뒤집어진 것 알고 계세요?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는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거해서……

○송석준 위원 그럼요. 분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뭐를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산을 검토하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대통령 입으로 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가능한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요 종교단체는 민법에 의거해서 설립·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 법인 행위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침해가 인정될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법에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 부분은 법을 어겼는지 혹은 공익침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하게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공익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해산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공익침해가 인정되고 법을 위반했다면 해산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하는 문체부장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공익침해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해 봐야겠지요.

○송석준 위원 공익성에 대해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체적 재판의 판결 없이 그런 애

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장관님, 이것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각 종교계가, 지금 단순히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불교계·가톨릭계·기독교계, 온 종교단체들과 직결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법을 집행할 때는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정말 신중하고 언어 조심하셔야 돼요. 정제된 언어 쓰셔야 되고,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벼락이 칩니다, 벼락이. 각별히 잘 모시고 자꾸 그런 이상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지 않게 보필을 잘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법에 의거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장관님, 우리 헌법에는 정교분리의 원칙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리고 종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종교의 특정 법인에 대해서 법에 정한 해산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실제로 일본은 해산시킨 적 있지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일본도 관련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최근에 해산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역대 문체부장관 초청했는데 제가 간다고 했다가 급히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다음에 다시 밥 한번 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은 우리 헌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통일교에서 만약 그러한 범법이 있다고 하면 해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종교단체는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신껏 얘기하세요. 그렇게 어물어물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통일교에 대해서 보도가 나옵니다.

제가 민주당 여당 위원으로서 맨 먼저 만약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손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수사해야 된다, 선택적 수사를 하면 윤석열 정부지 이재명 정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도 보도를 보면, 지금 나가셨는데 나경원 위원도 거기에 연루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곽규택 위원** 또 물타기하십니까?

○**박지원 위원** 보도가 됐어요.

○**박은정 위원** 보도가 됐나 봐요.

○**박지원 위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조배숙 위원** 아니, 돈 받았어요?

○**박은정 위원** 예, 돈 준 것.

○**조배숙 위원** 돈 받았어요?

○**박은정 위원** 서면이 있대요, 서면이.

○**조배숙 위원** 돈 받았어요?

○**박지원 위원** 잠깐, 잠깐 계세요.

○**조배숙 위원** 아니,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박지원 위원** 나경원 위원은 통일교 국제행사를 할 때 미국 펜스 전 부통령이 왔을 때 통일교 측에 ‘펜스 부통령의 면담은 나를 통해서 하게 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는가 하면 펜스 부통령을 윤석열과 만나게 하는데 송파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가…… 아, 다른 데로 옮겼어요.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민주당의 현직 장관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현재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경원 위원도 덮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교, 헌법을 저버리는 통일교의 범법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도…… 아베 총리가 어떻게 암살당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일본 총리가 통일교 검은돈에 손을 뭍지 않고 공천을 했다가 총리가 바뀐 거예요. 소신껏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저는 큰소리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쥐구멍 들어가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온다니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현행법은 종교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똑똑히 하세요. 관련이 안 되면 해산 안 한다, 그러나 관련됐을 때는 해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지금 ‘종교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장내 소란)

○조배숙 위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니,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발언 중이십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말을 거니까 하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종교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종교를 규제·해산·통제하기 위한 근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 번 종교법인 해산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요.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이 ‘과도한 국가권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십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종교재단 자체 해산하는 제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고, 거기서는 뭐냐 하면 문제행위가 있으면 개별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일본의 예가 있다 해 가지고 해산한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오늘은 A라는 종교, 내일은 B라는 종교, 그래서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리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 이게 ‘정치개입을 했네’ 해 가지고 이것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장관님, 자꾸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 법률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일본의 예만 보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이것 까딱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 계통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통일교를 예를 들시다—해산 조치를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선례가 되면 어떤 조그만 빌미만 있으면 이게 칼날이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계에서는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법률적으로 제대로 검토하시고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종교와 종교단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종교의 자

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정해진 법을 어기는 일이 있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예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런 예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러니까 단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ですよ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제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공익을 어겼더라거나 혹은 법을 어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종교단체는 법을 어길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실제 이게 장관님 말씀이 굉장히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갈 길이 머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및 37항의 법률안은……

의결하기 전에 아까 광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하나만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35항·36항, 공연법 일부개정안(대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필요적 감면 규정 이 부분은 삭제하자라는 광규택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41조의2랑 49조의3이지요—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34항 및 제3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휘영 장관님, 허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4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4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4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4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6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17시56분)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제39항부터 제60항까지 22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

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42항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시정 요청과 작업중지 요청 조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도 함께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의6제1항제5호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는바 부칙에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아 기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인에게도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8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 수립 및 이용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3에서는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현행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공익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해산에 있어서 민법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51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시장·군수 등의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지정 유지 재검토 및 지정 해제 및 지정 구역 변경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낚시통제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5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 규정에서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은 현행법 정의 조항에서 ‘위해성’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간명한 규정을 위하여 ‘위해성이 있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취지가 공중보건·방역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개정 부칙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56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지사와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시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며 생태통로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주체에 군수를 추가하면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군수의 경우 관할 구역의 도시지역 면적 비율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군내 도시지역의 면적을 확정해야 하므로 도시지역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58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46조의2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지구역 등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가 재검토 과정 없이 재량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은 재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정 해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제49항, 제52항, 제53항, 제55항, 제59항 및 제6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1항, 제43항, 제50항, 제5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 이미선 기상청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오늘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7주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김용균 노동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 점검하

다가 기계에 끼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의 신호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석탄가스과 복합발전설비 사고라고 하는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중대한 사고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 취임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감독·관리하고 계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11월 6일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7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또 유명을 달리했고요. 11월 16일에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화재가 발생해 5호기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하청의 구조적 분업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이 하청의,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분석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요.

산업재해 통계에 기록된 숫자 하나하나가 통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이고 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위원님 지적대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산재를 줄이기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산재를 줄이지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다만 50억 이상 규모가 되는 곳은 줄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은 사업장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엄벌보다는 지원이 먼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약 5000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해 나가면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산업부랑 또 기후에너지부랑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은정 위원**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또 수사가 늦어지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하고 법무부하고 신속히 협의해서 양형기준도 마련하고 조사 기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대체토론하기 전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불법적 행위를 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계 전체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독교나 불교 또 천주교 같은 정통 종교는 오히려 일부 종교가 정치권을 악용하고 정치권에 줄을 대고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의 힘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교세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정통 종교들이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종교계 전체가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 1월 1일에 전부개정이 돼서 순환경제사회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최혁진 위원 이 명칭 변경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조류에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우리가 과거의 폐기물 재활용 정도의 자원순환이 아니라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이 되고 저탄소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전환들을 한 것이라라고 보고 환경부도 그에 발맞춰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최혁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단히 미온적으로 이것 자체가 그런 충분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도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도 보니까 유관된 법들이, 폐기물 재활용이나 이런 관련 법안들이 오고 있는데 저는 순환경제사회……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을 동맥산업이라고 하면 순환경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자원화해서 탄소 배출도 저감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정맥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기존의 동맥산업 분야가 AI·디지털로 고용이 많이 축소되는 반면에 이쪽 분야에서는 또 새로운 고용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새로 가서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어떤 종합적인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관련법들의 개정이 그에 발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 문제는 기후위기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고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 문제도 매우 심각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더 이상 채굴하지 않고 기존에 생산된 것을 최대한 재사용·재활용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애플인데요. 매년 주주총회 때마다 해마다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재활용했는지를 어필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체를 다 재활용 사이클 안에 넣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그 추세를 고려해서 그렇게 많이 전환하고 있고 관련한 법도 상당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탈플라스틱법도, 저희가 종합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구요.

그렇게 자원을 순환해서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거나 채굴하지 않고 자연하고 공존하는 사회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요한 숙제여서 그런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혁진 위원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이 기존의 산업단지 옆에 순환 경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이 다시 거꾸로 정맥산업화 되게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산업부는 정작 산업단지를 관리하지만 이런 마인드가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장관님께서 산업부하고 협의하셔서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혁신기술도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기후환경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의 미래차 국가산단 현장 직접 시찰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마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그 해제 문제나 이런 거를 한번 직접 살펴보시려고 현장 방문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녀오신 뒤에 평가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당초에 광주시에서 제안했던 대안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무등산 국립공원을 중북 지정하는 안이어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우선 대안으로 GGM하고 붙어 있는 그 산업단지 지역은 생태 1등급하고 큰 관계가 없어서 다른 지역 사례들을 고려해서 우선 개발할 지역에 대해서 저희 기후부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시의 의견대로 전체를 다, 생태 1·2등급을 다 무등산에 붙여서 하는 방법은 어렵

겠지만 우선 개발 가능한 곳부터 개발을 하면서 다른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정부가 그리고 또 우리 당도,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광주를 미래차 또 AI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차 국가산단 이 부분이 빨리 조성되지 않으면 그 의지도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김성환 장관님, 구청장 몇 선 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선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재선. 성북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노원구청.

○송석준 위원 노원구청.

다양한 사업 해 보셨고 지금 기후환경부가 되면서 종전 환경부의 여러 가지, 또 에너지 업무까지 맡으시고 더구나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업무도 같이 다루시고 계시지요? 많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일을 하실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에너지가 환경부 이쪽으로, 산업자원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되는 게 에너지 중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너무 경도돼서 원자력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아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송석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서 대기 중의 화석연료를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는 게 인류 전체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주로 석탄 발전소와 LNG발전소에서……

○송석준 위원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잘 믹스해서 빨리 탈탄소사회로 가는 게 숙제라고 보고요. 그 두 가지의 각각의 장단점을 잘 조화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숙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원자력 산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송석준 위원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고 또 세계도 원자력을 다시 효율적으로 활용을 늘려 가는 추세니까 안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송석준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오늘 자연환경보전법도 통과되는데, 수도권 규제에 자연보전권역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송석준 위원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시간이 되는 대로 가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가 보셔야지요. 거기가 경기도, 수도권, 굉장히 예민한 동네…… 자연보전권역의 설정 이유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법에 나와 있는 거기는 하지만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라는 그게 어찌면 수도권 중에 3개로 나누면서 가장 규제를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막상, 오래 40여 년을 규제했는데도 보니까…… 이게 규제를 하면서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막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규모 제한을 하니까 소규모 주택, 소규모 공장, 각종 소규모 물류창고 이런 것들만 잔뜩 들어오니까 오히려 환경부 차원에서 수질관리를 더 못 한다는 거예요. 환경기초시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난개발이, 이미 이천 옆의 광주가 그게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규모 제한을 완화해 줘서 제대로 계획적 개발을 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환경기초시설도 강화하고 또 우리가 계획적 관리, 도시계획을 해 보셔서 아시지만 정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들면서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로 가야 된다, 과도하게 규모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실 계획적 관리 방안이 나왔었는데 세종시 이전하고 지방도시 만들면서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그래도 장관님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또 지방행정도 하셨으니까 한번 실태를 분석하셔서……

실질적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은 무조건 규모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난개발을 막고 녹지와 개발 용도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끔 바로 국토부하고 협의하셔서 자연보전권역의 막연한 규모 제한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관리했을 때 수질관리에도 훨씬 좋고 그런 것을 한번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관계 기관하고 논의 좀 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김성환 기후에너지장관님, 지금 어떻게 됐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

○박지원 위원 예, 재생에너지로. 그러면서도 원전의 필요성은 느끼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지원 위원 에너지정책은 믹스지요, 두 가지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지원 위원 특히 내일 방문하시려고 하는 신안, 저도 내일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잡혔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다녀오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기는 해상풍력발전으로 최고의 적지고 제가 목포 국회의원을 할 때 거기를 8.2GW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3.7GW로 축소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집적화단지의 기준이 그렇고요. 장차 전체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규모 정도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돼야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지원 위원 물론 장관님께서 늘 강조하는 태양광발전 비용 전기료보다 지금 해상풍력발전이 훨씬 높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많이 낮추려고 저희가 각종 거품을 걷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의 정책이 태양광발전은 원전만큼, 해상풍력은 태양광발전만큼 전기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정책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발전단가를 그렇게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지원 위원 진도에 3.6GW 집적화단지 신청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직접 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아니지요. 알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신청은 지자체가 하니까요.

○박지원 위원 글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내일 저도 신안 가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 뒤에 실무자들에게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누가 내일 신안, 해남 솔라시도 장관님 수행하냐?’ 아무도 없대. 전부 실세들이 아니고 국회 담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니, 이 관련 법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관련 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저 뒤에 전부 허세들만 앉아 있어요.

(웃음소리)

웃자고 한 얘기고.

꼭 가서서 신안 그리고 솔라시도 그리고 진도 문제를 잘 검토하시고 긍정적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이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만약 안 하면 기후에너지법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각오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대체토론하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혹시 새만금에 가 보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가 보셨습니까?

혹시 새만금신공항에 대해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국토부 일입니다만 거기 환경영향평가가 저희 업무라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9월 11일 날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였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국토부하고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최종 의견을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재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겠다는 뜻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국토부하고 조류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신설 공항과 기존 공항 간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 기준을 새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희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에서 최근에 새만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신항만도 새로 열리게 됐고 이게 공항까지 트라이앵글로 해서 전북 산업의 핵심 축이 되는데, 또 새만금공항은 전북인들의 꿈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새만금공항 가처분 관련해서 두 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놓으면 진행할 수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조류충돌평가 표준화지침을 만들고 그러시는지, 왜 무슨 의도로 이런 걸 만드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니, 저희가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전북도민들도 그렇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나 전북도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1심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면 사실상 백지화된다고 생각하는 전북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런 기준을, 지침을 만든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장관님께서도 새만금신공항이 정말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법안이 매우 많은 관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에 육아휴직제도를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표현함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정리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7항을 한번 봐 주시면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가 조금, 의미 전달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장 2주로 한다’ 이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다시 불러 볼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1주 단위, 최대 2주……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안해 주셨지만 제가 여기서 좀 헛갈리는 게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가 중복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10일 정도 쓰겠다, 연속 10일 해서 쓰고 싶다.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 기간을 생각해서 한 10일이면 의사가 퇴원할 수 있다 이러니까 ‘저는 10일 쓰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장 2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지요, 중간에 있는 10일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위원장님, 이 원래 취지는 1주일 쓰거나 2주일을 쓰거나. 10일은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위원장 추미애**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1주일 이상 진료 기간이 필요하다, 엄마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엄마가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면 7일이든 8일이든 9일이든 여기에 포함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일은 명절 때 어디 아이들 데리고 친척 집에 놀러 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1주나 2주 이렇게 자를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최장 2주로

한다' 그러면 14일 내에서 1주일 연속해서 쓸 수도 있고 1주일 넘는 8일 연속도 가능하고 9일 연속도 가능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1주 아니면 2주 이 공식밖에 없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원래 30일 단위로 돼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질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방학에 갑자기 휴교가 됐다든지 이런 편리를 위해서 세분화한 것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노무관리 차원에서 사용자 측에서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1주 단위, 2주 단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기업 측의, 사용자 측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주 단위라는 게 사용자 측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왜냐하면 대체도 넣어야 되고……

○**위원장 추미애** 아니, 그러면 앞에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이것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냥 '1주 단위로 사용한다.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이게 될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기표 위원** '주 단위'로만 고치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는데요.

○**위원장 추미애** '주 단위'로, '1'만 빼면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 단위'로 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을…… 왜냐하면 3일짜리 누구를 대체로 집어넣기가 여의치 않는 그런……

○**위원장 추미애** 알았습니다, '주 단위'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주 단위'로 하고.

○**위원장 추미애** '1주 단위'를 '주 단위'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주 단위'로 하는 그것은 큰 문제는…… 그것이 더 명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일 이런 것은 연차를 쓰면 되거든요.

○**위원장 추미애** 알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만약 10일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1주일만 육아휴직을 쓰고 3일 플러스할 것은 연차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3항, 제47항, 제50항 및 제5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 제42항, 제44항부터 46항, 48항, 제51항부터 56항까지 및 제58항부터 60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환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이미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 상임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
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2)
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6)
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0)
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7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3)
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7)
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2)
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시52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61항부터 8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5년 11월 24일, 2025년 12월 1일, 12월 5일, 12월 8일, 네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균택·김선교·전용기·한준호·김현정·권칠승·박덕흠·한정애·이건태·서지영·윤준병·주철현·박성민·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입법으로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배숙·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수집을 목적으로 2004년 발효된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을 위하여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해민·민형배·이광희·김기표·전용기·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한 판결서에 대해 문자열 또는 숫자열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네 차례의 소위를 통하여 2건의 대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만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인 점을 고려하여 2건의 대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합하여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에 게재된 하나의 통합된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이게 법안1소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우리 법사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중에 형사재판의 1심·2심 판결문을 공개 확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1심·2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

는 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대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다른 안건하고 같이 섞여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마치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도 찬성한 것처럼 해 가지고 소위원장께서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남겨 놓았고 또 제가 마지막에 표결이 끝났지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의결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발언을 해 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일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피해자가 됐든 피고인이 됐든 자기가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판결문을 어떻게든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삼자가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칫 그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그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고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사한 사례가 여러 지역의 재판부에 나뉘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판결 결과, 먼저 나온 판결 결과를 가지고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인가. 어차피 만약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일부 차이가 나는 1심·2심 판결이 있다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능인데 굳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안1소위에서 마치 이게 여야 간에 이의 없이 통과된 것처럼 돼 있을 건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장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저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열람·복사 제한 사유로 사건 관계인 명예라든가 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재판관인 판사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에서는 우려하시는 바를 줄이려고 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장관님, 법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피고인, 피해자 등 소송관계인이 각호 사유를 소명해서 법원에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마련해 오셨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판결이 공개가 돼 있는 확정된 판결에서조차 이게 규정되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검사나 피해자나 피고인이 알게 해 줘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청을 기다려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법원에

서 판단해야 되고—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사건을—그건 약간 무용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퇴보한 법안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확정된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심급제도에 의해서 개선해라,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국 각처에서 형량이 들쭉날쭉한다든지, 심지어 유무죄 판단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그것이 3심까지 안 가더라도 양형을 통일하거나 아니면 유무죄의 일치성을 가져오는 데,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확정된 판결도……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각호에 공개하지 아니할 이런 조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부에서 가져온 안에 의하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제한하거나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좀 불필요하게 만드는 면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호에 사유를 또 구체적으로 규정해 봤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님들이 그런 거를 따져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지 각각의…… 이게 지금 1년에 몇 건이 들어올지, 만 건이 들어올지 한 건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절차를 둔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행정처장님, 그리고 그 전에 부칙 관련해서 시행을 1년으로 소위에서 정했는데요. 제가 사정을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1년 안에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은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광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미확정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원칙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5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사실 과반수 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론 의견을 개진하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로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분들의 취지는 판결문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사전적으로나 혹은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즉 이게 1년 안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저희들하고 똑같이 판결문 전면 공개 원칙을 취해서 입법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제일 크게 대두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른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사건의 판사가 누구였는지를 갖다

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전관예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도 1년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시행을 앞두고 정치하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2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기로는 예산적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최대한 당기면 1년 6개월까지는 당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소위에서 합의가 된 부분인데 여기 부칙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김용민 소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2013년 이전에, 즉 2000년도 8월부터 2013년도 까지 판결서하고 등본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증거목록이라든지 기타 서류 이런 부분들은 검찰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표 위원** 아니요, 마이크 1분만 더 주시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김기표 위원** 맞아요. 그게 2008년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판결문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2013년 이전.

○**김기표 위원** 2013년 이전.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칙에 넣기로 했으니까 부칙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그걸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게 맞고.

그다음에 시행도 제가 보기에 1년은 좀 부족하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게 정말 일찍 되면 좋겠지만 1년 차이로 완전히 막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 준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시행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2년 정도로 부칙을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선 제가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해 온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열람·등사 제한 신청과 관련하여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열람·등사 공개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판결 당시에 법정에 출석한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안내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에서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지금 가져온 안은 검사·피고인도 같이 다 넣어 가지고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검사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의견을 전부 다 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판결문 공개의 취지가 이 조항 자체로 몰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8항은, 법무부에서 만들어 오신 이 안은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소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를 저도 김기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고, 경과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소위에서는 1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1년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2년이 좋고 정 안 되면……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형사 판결이다 보니까 특히 민사하고 또 다르게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피해자든 또 피고인 이든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비실명화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 할 때 저희들이 예전에 2년 경과를 두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짧게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우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어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보완 조치도 필요하고 해서.

○**박은정 위원** 그러면 저도 2년에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것에 기속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아니면 그게 정 불필요하다고 하면 피해자 정도는 좀 그런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재판장이 그것에 기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오늘 현안질의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서 뵈 김에 몇 가지만 좀 여쭙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제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이 갑자기 수사 중간보고, 저는 결과 보고인가 했는데 중간보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보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문 안 중에 이런 문안이 있었어요,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마약 176kg이 580만 명 투약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똑같은 루트로 열세 차례나 걸리지 않고 들어왔는데 도운 흔적이 없으니까 혐의없음 처분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전방 DMZ에서 북한군이 몰래 침투해서 뚫리면 사단장으로부터 해서 줄줄이 전부 다 처분을 받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설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한다라

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됐고요.

이게 마약이어도 큰 문제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생화학무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화학무기 176kg를 제가 찾아보니까 살인가스로 하면 1만 7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게 그냥 국경을 뚫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TNT 폭약 가루였다라고 그러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 수사 보고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고.

또 하나는 김건희 일가의 연루설에 대해선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거기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마약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해 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스럽게 했을까……

예를 들면 또 오늘 언론에 보니까 백해룡 경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직전에 이 발표를 해 버려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연막전을 펼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켜서 지금 댓글들이 장난이 아닌 상황들을 왜 초래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엄중하게 조사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임은정 검사장 팀들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화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셨는데 당사자였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갖고 일단…… 저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한번 장관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일단 이런 중간보고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백해룡 경정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혁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자회견이나 뭐나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의혹들이 괜히 부풀려지지 않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뵈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리 누워서 자다 깨서 일어나서 천장을 봐도 방바닥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님이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우리가 지귀연 판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안심하고 지켜보라든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결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말

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이야기할 때마다—어제 판사들도 모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인사라든가 평가 제도가 바뀌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이런 분들이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판사는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며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법무부장관님이 추천한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추천받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무슨 토끼 간입니까, 꺼냈다 집어넣었다 그때그때 다르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법원행정처장님이 그 대로 입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내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이 꼭 짚어서 세운 판사가 정상적인 재판을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판사는 인사나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추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말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짚어서 지명한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고, 위헌이면 위헌이라고 얘기하든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한다라든가, 저는 이런 게 흑세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뵈게 되면 여쭙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건지 오늘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관들뿐 아니라 최근에 전법대, 전국법관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대한변협 또 더 나아가서는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경실련 등 모든 단체들에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이나 한두 기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 말씀은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바라는 충정에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입니다.

○**최혁진 위원**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말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만약에 법원행정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장관님이 추천을 했던 헌법재판소가 추천을 했던 국회가 추천하든 누가 추천하든 그 판사는 다른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판사가 하든 재판은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이 어떤 재판관을 더 신뢰할 거냐만 보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추천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얘기하면 앞말이 안 맞잖아요.

법무부장관님, 혹시 추천하면 판사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재판관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최혁진 위원** 아니잖아요. 판사를 추천하실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도 판사를 추천할 거잖아요.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이 말씀만, 한마디만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늘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이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재판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위헌판결을 받아서 무효화돼 버리면 그에 따른 사법적인, 역사적인 책임은 저희 법원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나 또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아니, 판결을 이틀 만에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대법원이 직접 사례를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뭐가 연기가 됩니까? 이틀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파기환송심.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재판에 따라 달라집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최혁진 위원**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말이 나온 김에, 모두가 위헌이라면 위헌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모두가 김학의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김학의는 형사보상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 모두는 이제 김학의가 김학의라는 것 알아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누가 이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학의는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며 형사보상금을 국민 혈세로 받아 갈 권리가 생겼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위헌으로 인해서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책임지느냐 하셨잖아요.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 자꾸 뭔가 부당한,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번번이 하시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이 내란 사태, 내란범에 대해서 번번이 위법성에 다툼

의 여지가 있다는 사법부의 인식 수준을 보고 입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상식이겠습니까?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사법부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사법부가 아무런 기여도 안 했어요. 사법부가 광장의 고함 소리마저 외면했습니다. ‘여론으로 판결에 간섭한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하는 그 옥탑방의 엘리트 같은 인식 속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국민주권이라는 그 국민적 요구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하면 재판절차가 좀 더 신뢰 회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그렇게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법률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모두가 위험이라면 위험이다…… 차라리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구두로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뭐가 위험이다 또박또박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법왜곡죄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행정처장님도 법사위 소위 과정에서 참여하셨고 전체회의에 참여하셔서 법왜곡죄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잘 조문화돼 있다는 것 다 참여해서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위험하다, 위험 소지가 있다, 그냥 그것은 국민 선동입니다. 전문가로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국민을 향해서. 그런데 국민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제가 일단 한두 가지 정리하고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를 이어 가 볼게요.

일단 형사소송법의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무료로 공개하는 거지요, 저희가 법적 근거는 안 넣어 놓았지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일반 국민에게는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있으시기는 했지만 앞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중요한 사건, 특히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들은 이미 앞에서 법원이 다 거를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저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래서 종합하면 1소위에서 처리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한 얘기 좀 해 볼까요?

법원행정처장님, 모두가 지금 위험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위험이고 국민주권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원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그게 진짜 모두가 위험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위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야 되는 일입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했어요.

○**나경원 위원**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민주당이 혼자 하는 거지.

○**곽규택 위원** 민주당 의원님들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조배숙 위원** 뭐가 위험이에요? 모두가 뭐가 위험이에요?

○**김용민 위원**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먼 겁니다. 왜 그걸 못 봐요, 다 알고 있는데?

○**나경원 위원** 민주당이 혼자 하는 말이지.

○**곽규택 위원** 제삼자하고 본인하고 구별도 못 하세요?

○**김용민 위원** 그리고 또 봅시다. 윤석열 배당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법원에서 사건 배당할 때 배당을 어떻게 해라라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법률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률 자체에는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배당과 관련된 규칙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최대한 유사한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법원조직법 32조에 합의부 심판권이 있는데 저기 보면 1항에 형사사건은 저런 사건들을 합의부 심판으로 한다 그래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내란 사건이 딱 여기 들어가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4호가 중요합니다, ‘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관련사건으로 보낸다는 의미는 ‘동시에 심판할’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 사건 병합해서 증거도 동일하고 증인도 두 번 나올 것 한 번 나오게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관련사건의 의미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실무에서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 면에 있어서……

○**김용민 위원** 관련사건 자체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배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배당에 대한 근거 규정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 자체에는……

○**김용민 위원** 배당에 대한 근거 규정에 가장 가까울 수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 심판할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곽규택 위원** 이거는 관할에 관한 거지 이게 무슨 배당에 관한 거예요?

○**김용민 위원** 들어 보세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곽규택 위원** 틀린 말을 하니까 그런 거지.

○**김용민 위원** 직접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관련 규정을 드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아니, 간사님이 저렇게 전제를 모르고 말을 하니까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법적 근거 규정이 없지요.

들어 보십시오.

윤석열과 김용현 공판기일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 지금 원래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 배당하고 나서 관련사건으로 윤석열 사건 배당했습니다. 그것은 동시 처리하라고, 아까 보신 것처럼 동시 처리할 공범 사건이기 때문에 보내 준 거로 법적 근거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사건 다 다르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지껏 속았습니다. 관련사건 배당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병합해서 동시에 처리하고 증인 한 번에 불러서 같이 심문하고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귀연한테 지정 배당했어도 법조인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병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병합 안 하고 있어요. 따로 재판하는데 왜 지귀연한테 쫓아 댔나 그거를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보십시오. 전두환·노태우, 내란 수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저 사람들은 병합심리 했어요. 나눠서 재판하지 않았다고요. 윤석열의 자리에 전두환이 있었고 김용현 자리에 노태우가 있었는데 병합해서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노태우는 22년 6월 징역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런데 지귀연, 지금 따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처리 필요한 중요사건 배당규칙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적시처리 사건 선정 기준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이거를 적시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귀연이 지금 이려고 있어요. 그러면 적시처리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해당 재판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만간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모든 법원의 구성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규정의 ‘동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시간을 지킨다거나 또 병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병합이 필요한 사건은 병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병행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건이 어느 쪽이 적합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개별 재판에 관한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조금 전에 행정처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 되면 재판이 신속하게 안 끝날 거라고 했지요? 지금 정확하게 모순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병합심리를 했으면 재판 진작에 끝났어요. 병행심리를 하니까 이 큰 두 사건을 각각 따로 재판, 지귀연 재판부가 하나 해서 각각 따로 재판하니까 재판이 이렇게 질질 늘어지는 겁

니다, 똑같은 증인 두 번 불러서 증인신문 하고 있고 똑같은 증거 두 번씩 보고 있고. 그래서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진작 끝났을 사건이. 법원 스스로가 지금 신속한 재판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사법 신뢰를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 지정배당 선정 취소해서 다시 재배당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자구책으로 재배당했어야 됩니다.

왜 말도 안 되게 지귀연한테 관련사건 지정, 꼭 찍어서 그냥 쫓아 댔습니까, 진짜? 그랬으면 병합이라도 해야지 왜 병합 안 하고 따로 재판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되게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서영교 위원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죠. 부역하는 거예요, 부역하는 것.

○곽규택 위원 재판받는 피고인끼리 이해관계가 다르면 병행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병합하는 게 아니고.

○서영교 위원 부역하는 거야, 부역.

○김용민 위원 대부분 다 병합해요.

○나경원 위원 좀 알고 해요, 알고.

○신동욱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민주당, 오늘뿐 아니지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은가.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그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장 하나하나를 보면요 지금 최혁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법무부장관님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다고 그러지만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어떤 논리로 무너지는지, 나치의 그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어떻게 히틀러의 독재 체제에 악용이 됐는지 잘 나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하나 좀 여쭙보겠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마약밀수 사건 문제가 생긴 게 2023년 9월이니까 벌써 2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논란을 빚었고 민주당이 이 문제에 올라타 가지고 윤석열 정부

의 마약 카르텔 운운하면서 거짓 선전·선동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신뢰하는, 친민주당 성향의 임은정 검사가 지휘하는 합수단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찰떡하게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밀수범들이 자작극한 것이 판명이 났다. 현장검증서에 보면 ‘그냥 연기해’라며 밀수범들이 입 맞추고 있다. 지목된 직원, 그러니까 마약밀수에 연루되었다고 지목된 직원이 범행 시간에 잠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실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연락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 관련자 휴대전화 마흔여섯 대 포렌식을 했는데 대통령과 연락한 것 전무하다. 대통령실 최초 보고는 백 경정 측 브리핑 한참 뒤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으면서 이게 아무 실체도 없다는 것임을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망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한, 2년 반 동안 마약 카르텔을 운운한, 그것을 주장해 온 이런 분들이 왜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카르텔에, 그것도 대통령실이 마약 카르텔의 수뇌부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해 가지고 2년 반 동안 백해룡 경정의 그 망상 때문에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검증해 보자는 말 한마디 없이 민주당 위원님들 입만 열면 그 주장에 편승해 가지고 법사위만 해도 올해 벌써 몇 번이나 백해룡 경정이 나왔습니까?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오늘 임은정 수사팀의 중간발표입니다. 중간발표고 또 백해룡 경정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의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객관적으로…… 백해룡 경정의 주장도 또 다른 증거에서 입증되지 않은, 입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신동욱 위원** 그러면 백해룡 경정은 계속 수사시킬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수사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팀에서도 또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얼마나 국력 낭비가 심합니까?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우리 여야 막론하고 권고를 드리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검이 문을 닫는 시기에 민주당 의원 15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공판이 있으니까 어제 대통령이 종교, 통일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오늘 입을 닫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부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마무리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아까 김용민 위원 1분 더 드렸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예, 그렇게 하세요.

○신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똑같이 민주당과 저희 당을 같은 잣대에 두고 수사를 했으면…… 지금 다른 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의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 상황 상황 설명이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전재수 장관 건은 진술을 받았는데도 덮었다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이유를,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지금 이미 정치특검임을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한말씀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맹세코 말씀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특검의 수사 진행에 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결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 관련된 의원들에 관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여야 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예,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지금 신동욱 위원께서 발언하시면서……

○신동욱 위원 제 발언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질문하십시오. 제 발언……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

○신동욱 위원 뭘 조용히 해요!

○서영교 위원 조용히 해요!

○신동욱 위원 왜 제 발언을 평가합니까!

○박지원 위원 당신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했어?

○신동욱 위원 왜 박지원 위원이 제 발언을 평가합니까?

○박지원 위원 들어 봐!

○신동욱 위원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평가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신동욱 위원 그냥 질의하세요.

○최혁진 위원 본인은 사사건건 그러면서!

○신동욱 위원 질의하세요. 뭘 평가를 해요?

○서영교 위원 위아래도 없이 무례하기 짝이 없어!

○신동욱 위원 그냥 질의를 하세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 봐!

- 신동욱 위원 그냥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 박지원 위원 질의한다니까, 지금.
- 신동욱 위원 제 이름 입에 담지 마세요, 그러니까.
-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 박지원 위원 왜 당신은 내 이름 불러?
- 신동욱 위원 왜 제 이름……
-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 신동욱 위원 아니,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부르는 거지요.
- 박지원 위원 들어 봐, 들어 봐!
- 신동욱 위원 제가 박지원 위원님 질의에 토 단 적이 없습니다.
- 박지원 위원 들어 봐요, 그러니까!
- 신동욱 위원 왜 남의 질의를 자꾸……
-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지금 박지원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계십니다.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박지원 위원님의 발언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오늘 이후로 발언 제한 조치를 합니다.
- 곽규택 위원 ‘오늘 이후로’는 또 뭐예요?
-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명백한 침해입니까? 왜 박지원 위원은 반말을 합니까?
-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저도 수없이 발언 방해받았습니다.
-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본인은 저와 위원장님을 나치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대 놓고 자기 이름 불렀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 나경원 위원 박지원 위원은 왜 반말을 합니까, 동료 위원한테?
- 신동욱 위원 저도 수없이 발언 방해받았습니다. 그때 단 한 번도 그런 지적 안 하셨잖아요.
- 최혁진 위원 신동욱 위원님! 나더러 나치 같다면서요, 나치!
- 신동욱 위원 왜? 찢려요?
- 최혁진 위원 나치 같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 신동욱 위원 그 책 읽어 보라고요. 누가 나치 같다고 그래요?
- 최혁진 위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 신동욱 위원 왜 저는 그렇게 수없이 발언 방해받는데도 한 번도 제지 안 하시면서 제 얘기에 대해서 왜 발언권을 정지시킵니까?
-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은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본인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명예를 공격하고 했었어요. 도발하셨어요.
- 나경원 위원 아니, 왜 민주당 위원들한테는 경고를 안 합니까?
- 신동욱 위원 발언권을 얻기는 누가 얻어요! 제 발언권은 너무나 당연한 저의 권리입니다. 제가 책 얘기도 못 합니까?
- 위원장 추미애 본인은 그렇게 하셔 놓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고 신동욱 위원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박지원 위원님의 발언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 곽규택 위원 우리 쪽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라고요, 똑같이.

○위원장 추미애 발언 제한합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공정하게 하세요.

○곽규택 위원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추미애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시고 계속 떠드시면 퇴장 명령할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똑같이 진행하세요, 똑같이.

○신동욱 위원 똑같이 하시라니까요. 저쪽에서 수없이 발언 방해당했는데 왜 그때는……

○위원장 추미애 알면서 왜 그래요? 왜 개전의 정이 없습니까, 똑같이 하는 줄 알면서?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아니, 수없이 발언 방해해 놓고서 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을 안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하는 위원장이 향후 어떻게 할지 잘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공정하게 해 주세요, 공정하게.

○조배숙 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나경원 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곽규택 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위원장 추미애 계속 떠드시면……

○주진우 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한테도 똑같이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36분 회의중지)

(2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신동욱 위원이 발언을 하시면서 최혁진 위원, 추미애 위원—위원장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히틀러’, ‘나치’. 그리고 민주당도 ‘히틀러’, ‘나치’라고 했지마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신동욱 위원의 발언을 그 시간에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까 곽규택 위원이 ‘모르니까 고쳐 준다’, 몰라도 그 위원의 발언은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조심하고 조용히 합시다.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에 정교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종교가 정치를 침범해서 일탈된 탈법 행동을 할 때는 종교 해산을 할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정교분리 원칙은 우리 헌법상 준수되어야 한대라고 저희들 배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박지원 위원 방금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쨌든 주무 관청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달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죄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전재수 장관 보도가 맨 먼저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이 뉴욕에서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아니다’ 하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해명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건가, 저는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나경원 위원도 보도가 됐어요, ‘관련이 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경원 위원은 통일교 행사 때 펜스……

○나경원 위원 수천만 원 받은 민주당은 무슨……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요, 내가 하나까.

펜스 부통령을 나경원 위원이 ‘내가 창구가 돼서 윤석열과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경원 위원이 펜스 부통령에게 국민의힘 당사로 와라 했는데 거부하고 송파 모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고 하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경찰에서 특별수사팀을 짜 가지고 수사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 종알거릴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아니다’.

○나경원 위원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수천만 원 받은……

○박지원 위원 ‘말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냐고요.

○나경원 위원 아니, 보도 다 찾아보세요.

○박지원 위원 보도가 됐으니까 저는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뉴스토마토 하나……

○박은정 위원 MBC에도 났어요, MBC에도.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해명을 하라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남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자는 말이에요.

○나경원 위원 기사 만들고 싶으셔서 가지고 물타려고 말도 안 되는……

○곽규택 위원 언어 수준이 참 그렇습니다. ‘종알’이 됩니까?

○박지원 위원 종알거리지 마!

○나경원 위원 ‘종알’이라니요!

○곽규택 위원 참 나, 저 말하는 수준하고는.

○박은정 위원 윤영호 진술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윤영호.

○나경원 위원 말하는 수준하고는, 정말.

○곽규택 위원 언어 수준이 인격을 나타낸답니다.

○박은정 위원 윤영호 진술서에 있다는 거잖아요.

○곽규택 위원 언어 수준이 인격을 나타낸다고요.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 윤영호 진술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돈 받았다고. 사실입니까?

○곽규택 위원 좀 배우세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요.

우리 법사위가 늘 떠드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부터, 여권부터 저쪽 야당 위원들이 발언 하면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건 특검이건 나경원 위원도 철저히 조사해라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장관님, 법무부장관님과 법무부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양대 축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번에 소위 법왜곡죄니 법원행정처 폐지법이니 비상계엄특별재판부법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부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전국법원장회의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뜨거운 사법부의 그런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천대엽 처장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법관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까지도 ‘이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자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들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절대無理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온 법치주의, 이 아름다운 국가 시스템입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서,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 장관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장관님, 인권위에서 12월 1일 날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수사단 고발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특검은 가장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의 혈세를 갖고 특별한 조직을, 특별한 돈을 들여서 만든 조직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허위·조작 수사를 해 갖고 선량한 지방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이번에 인권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해 갖고 형사 고발했잖아요. 수사 의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권위에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권위가 일단 그런 조사 해 갖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했는지 여부조차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추후에 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장관님, 항상 내로남불, 항상 이렇게 누가 어디서 조사해서 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간다 이렇게 신뢰를 안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에, 이번에 어떤 특정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잖아요. 대대로 이어져 왔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국민들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문점이 제기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계속 제기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채 해병 특검은 종료됐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를 압수 수색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많은 포렌식, 인권침해적 그런 행위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돈을 무려 44억이나 써 가면서 말이지요, 40억을 써 가면서.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선 특검 당사자,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미공개 정보로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살인 특검이라는 오명도 쓰고 더구나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편파 수사로 지탄을 받고 피의사실공표 위반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특검이 이렇게 엉터리 불법, 이 오명을 쓴 특검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검이 그동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일부 있지만 그게 어거지가 많잖아요. 더구나 지금 내란 특검이라고 그 래요? 정확한 명칭은 비상계엄 특검 아닙니까? 내란이라고 단정된 것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비상계엄 특검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돈을 87억이나 막 써 가면서, 제발 이러지 맙시다. 다시 한번 특검 잘못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추스려서 나중에 다시 특검을 특검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장관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충분히 하신 분은 자꾸…… 지금 10시 10분입니다.

○**송석준 위원** 1분만 주세요, 날 새지는 않을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다른 위원님들, 아직 대체토론 못 하신 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저는 1분을 또 자르시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장관님, 하여튼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좀 인정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부칙 2조와 관련해서 보면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판결문하고 등본만 있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찰에 확정기록을 다 넘기기 때문에……

○이성윤 위원 그러면 부칙 2조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렇게 범위를, 법원에서도 판결문과 등본만 있다 하니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사건으로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충격입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같이 계시는 나경원 5선 의원께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어떤 보도……

○나경원 위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윤석열과 펜스 부통령과의 회동을 어레인지했다. 어레인지했다는 말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니까 참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약간의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또 통일교 부회장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조금 가운데서 어레인지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누구랑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해 보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 쪽 일정 팀…… 윤석열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본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것을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또는 우리 당사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깊숙한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돈을 줄 가능성도 높아요. 이렇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보도된 의원이 법사위에 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오시자마자 ‘조선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다, 앓아 있어라’ 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최혁진 위원님께서 가족이 법원장이니까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해도 계속 나오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나경원 위원 지라시 같은 언론이 하나 끝까지 쓰게 만들고서는 그렇게 하는군요.

○박은정 위원 MBC가 썼다고요, MBC가. 무슨 지라시예요!

○이성윤 위원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은 해명할 일이에요. 수사받아야 돼요.

○나경원 위원 무슨 수사를 받으니까?

○박은정 위원 수사받을 게 한두 개예요?

○이성윤 위원 저는 최근에……

○신동욱 위원 그 MBC가 지라시예요.

○박은정 위원 TV조선만 할까요.

○나경원 위원 특검 수사 무마하고 지금 하는 짓이 뭐 하는 겁니까?

○이성윤 위원 수사받아 보세요.

○나경원 위원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다 하세요. 다 하신 다음에 얘기할게.

○이성윤 위원 본인이 통일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 마치 윤석열의 내밀한 대변인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통일교하고. 이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수사 뭉세게 받고…… 한번 받아 보세요, 그러면 진실이 나올 거예요.

○박은정 위원 내란 수사도 받아야 돼요, 내란 수사.

○이성윤 위원 내란 수사도 받아야 되고. 참 고생하시겠어요.

저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장관님,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12월 3일 날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윤석열도 옥중 메시지를 냈지요. 장관님, 윤석열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메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윤석열이 ‘내란 광풍’이라고 하니까 장동혁은 ‘내란 물이’라 하고 윤석열이 ‘사법부 장악’이라 하면 장동혁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사법부 장악’이라 하고 또 현 정부를 향해 ‘레드카드를 꺼내 달라’고 하니 장동혁도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선동하고 윤석열이 ‘하나 되어 전진하자’고 하니까 장동혁도 당의 목표를 ‘하나 된 전진’이라고 천명했어요.

오늘 나경원 5선 의원께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고 또 정경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해산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우리 헌법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 어떻게 하면 내란 수괴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장관님,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고 국민들로부터 법사위 비난받게 만드는 저 내란 정당,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정당 해산 문제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 입장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끝나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주진우 위원 저희 차례 아닌가요? 저희 차례잖아요.

○나경원 위원 저희 차례 아닙니까, 저희 차례?

○주진우 위원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요, 최소한. 지금 나경원 위원 얘기를 했는데 번갈아 가면서 줘야지요.

○나경원 위원 주셔야지요, 지금 두 사람이나 했는데.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나경원 위원 얘기를 더 할 테니까 그다음에 하세요.

나경원 위원이 자기 SNS에 서영교 얘기를 썼어요. 두 번 썼더라고. 면책특권 밖에서 써서 딱 걸렸어. 아주 딱 걸렸고, 쿠팡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공작이라고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법적조치를 서영교가 했고 대한변협에서도 법적조치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위원이 SNS에 두 번 썼길래 딱 걸렸어요. 그래서 법적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면책특권 밖에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법적조치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통일교 녹음 파일 그리고 뉴스토마토 기사 등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네요. 아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고 ‘어레인지 나!’, ‘깊숙이 관련된 나경원 위원’, ‘내밀한 관련’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이 할 거라고 하지만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경원 위원 수천만 원 받은 전재수 가리려고 별짓들을 다 하네, 진짜.

○서영교 위원 ‘별짓’?

○나경원 위원 별짓들을 다 하는 거지요, 특검이나.

○서영교 위원 아니,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별짓’?

○곽규택 위원 ‘별짓’이 왜요?

○서영교 위원 ‘별짓’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곽규택 위원 순수 한국어예요. 순수 한국어라고.

○서영교 위원 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SNS에 쓴 사람들에게 법적조치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혹시 틀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저 영상 한번 보세요.

모든 분들이 저 영상 한번 보세요.

틀어집니까? 노상원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셨어요? 도대체,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상원 재판은 어디 갔느냐?’. 노상원 재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노상원 재판이 보이지 않고, 공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법원에서는 스스로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계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법을 바꾸고 나서야 노상원이 공개되고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한답니까. 노상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넣고 백령도에 폭약에 포탄에 폭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에다가 드론기를 띄웠고요. 남

북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아직도 저 국힘당들은 내란이라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나치보다 더해요. 윤석열과 국힘당은 나치보다 더해요.

○**곽규택 위원** 나치보다 더하다는 표현은, 그 표현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것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세요?

○**서영교 위원** 나치보다 더해요, 아주. 여기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서영교 위원** 내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두 번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두 번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뒀으면……

○**곽규택 위원**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요, 그게.

○**서영교 위원** 그대로 뒀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법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담재판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을 위배한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작위 배당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요? 법원행정처장님도 윤석열 범죄자가, 내란 수괴가 무작위 배당된 걸 몰랐다고 했지요? 무작위 배당되지 않고 관련사건이라고 배당된 걸 몰랐다고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사건이 무작위 배당되고 나서 관련사건으로 해서 그쪽에……

○**서영교 위원** 그렇게 된 것을 이번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면서 모든 법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되지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위헌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지귀연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특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특검도 위헌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검을 추천할 때 특검 추천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다고 문제 제기했어요.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갑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

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수사하던 것을 이관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이 공정하지 않게 윤석열을 갖다 쫓아 쫓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시간 지났습니다.

○나경원 위원 시간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하게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위헌은 1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특검은 사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사회적 분쟁, 특히 이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쟁의 최종 해결 역할을 맡긴 그런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위헌 요소가 생기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정말 역사적인 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헌적인 시비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거나 재판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면 저희들로서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위헌 요소가 없도록 접근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고려, 즉 감정적인 고려나 정치적 고려 전혀 없이 이 재판이 온전히 올바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행정처장님,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의 질의는 법원행정처장님의 종전 답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행정처장님께서선 선수가 심판을 정한다든가 심판이 선수를 정한다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법무부장관의 추천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무슨 사법부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 선수를 고르는 데 관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궤변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반박하는 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고 대답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법권 행사가 최종적인 분쟁 해결 절차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위헌적인 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그 선수·심판 논리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이미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선수를 고르는 데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걸 위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특검 추천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추미애 알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아는 척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논리 모순을 자꾸 저지른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적당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위원장 추미애 우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궁리하실 사이에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왜 발언권을 안 줘니까, 우리 당에? 우리 당에 발언권 좀 주세요.

○주진우 위원 본인 질의시간에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당연히 병합심리라고, 최소한도 관련사건이라고 쫓아 쫓으면 병합심리라도 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병합심리조차 하지 않고 지금 중계된 재판 법정을 보니 별개로 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천년만년 지연시키는 핑계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무작위 배당 회피뿐만 아니라 그 무작위성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리쬐는 배당이라는 법사위원님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 더군다나 김용민 위원이 지적 하던 것처럼 신속심리를 위해서 당연히 병합심리가 됐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그저 병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가장 허술한 재판, 가장 전문성과 거리가 먼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에서 그리고 대등재판부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허술한 재판을 MC, 사회자처럼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걸 법원행정처·사법부 전체가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병행심리와 병합심리의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관련 규칙을 이 회의 마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 전원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별도로 규칙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너무나……

○위원장 추미애 별도의 규칙이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할지 또 병합할지 여부는 그 사건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재판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규칙이 없습니까? 그게 자신 있습니까,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병행하고 어떤 사건은 병합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위원장 추미애 관련 규칙이 전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구속력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구속력이 있든 아니든 기준이 됐든 관련 규칙이 전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광의의 기준은 저희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광의의 의미에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찾으셔서 법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질의 좀 합시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 그만 좀 하세요.

○주진우 위원 질의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곽규택 위원 지금 법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그만 좀 하세요.

○최혁진 위원 필요한 자료입니다.

○신동욱 위원 법사위 혼자 하세요, 혼자.

○곽규택 위원 이 법안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혁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경원 위원 정말 나치의 법률가들 같아, 나치 법률가들.

○위원장 추미애 나치식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그런 발언이 나치식이에요.

○송석준 위원 독재식 운영하지 마시고요.

○신동욱 위원 그래서 독재라는 거예요, 지금.

○송석준 위원 정부 관계자도 존중해 주세요, 사법부 관계자.

○위원장 추미애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나경원 위원 물타는 거 보니까 이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이 너무너무 아파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금 4000만 원, 시기도 나왔고요. 명품 시계 2개라는 내용도 나왔고 특히 통일교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어요.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진술한 윤영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영장도 다 청구하고 국민의힘은 수사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여자랑 자금 출처도 같은데 유독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건번호도 즉시 부여하지 않고 윤영호의 폭로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번호를 넣고 기록도 만들었다가 진작에 인계를 했어야 공소시효 문제 등도 안전한데 그것을 이제서야, 지금 문제가 되니까, 들키니까 보낸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직무유기 범죄에 명백히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느닷없이 오늘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 한 곳이 나경원 위원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다 언급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금품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한 줄 나와 가지고 물타기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까.

국민의힘, 만약에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으면 그때 수사를 했겠지요. 권성동 의원 수사할 때 그것 관련된 내용들 다 확인했으면 왜 그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부 언론사들은 기사 썼다가 지금 다 내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전재수 의원 관련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직관적이다 보니까 저는 물타기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장관님, 대통령이 오늘 ‘여야 관계없이 엄중히 수사하라’, 진심이지 않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공평하게 또 엄정하게 수사할 기회를 한번 날려 먹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윤영호의 진술이 바로 확보되고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그러면, 수사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본인이 아는 상태에서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것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경찰을 지휘하는 게 행안부장관인데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버젓이 매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님 또 행안부장관님 또 전재수 해수부장관 그렇게 해서 다 회의 때마다 마주치고 만나고 옆의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는데 말로만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장관은 경찰 수사에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직접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을 때는 본인이 거취를 정리하고 나중에 해명이 되고 돌아오는 것은 몰라도 지금 대통령이 엄중히 수사하라고 해 놓고 버젓이 그러면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인사권자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국정을 논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엄중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미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이라고든가 그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건들이 특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또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건이 나오고 관련 진술도 확보했는데 특검이 도대체 왜 수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더더구나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또 통일교 관련해서, 누가 듣더라도 통일교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통일교 재단에 대해서 사실상 법제처장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통일교를 아예 그냥 재단도 해산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용 멘트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처럼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니까? 윤영호 씨가 오늘 법정에서 분명히 본인이 공언한 대로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 다 본인이 공개 발언하겠다고 했는데 발언을 싹 뺐어요. 그게 저는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수사 가이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대통령께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직 딱 통일교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다른 종교가 뭐 있나요, 지금 문제되는 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종 혐오 정서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아니, 지금 다른 현안이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통일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 장관님,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는 종교단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불법 자금과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종교단체가 통일교 말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근에는 통일교가 가장 문제 되고 있지요.

○**김재섭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를 적시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 하셨는데……

○**김재섭 위원** 특별히 그 문제가 지금 여야로 모두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시의적으로 그 말씀을하신 거는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문제 있으면 지탄받아야 되고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자들 지금 처벌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여당·야당 고루 수사가 잘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중차대한 사건을 마주하는 특검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관련자들 처벌해야 된다고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실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특검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에 관련해 갖고 특검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내부적인 그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만약에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앞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특검은 이미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척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왜곡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이것 처벌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거는 물론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특검에서……

○**김재섭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 법왜곡죄의 문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누가 보기에 법 왜곡이고 누가 보기에 공소권 남용인데 그걸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그게 법으로서 인정할 수, 형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같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 해산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정교분리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관께서도 해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느끼는 것이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요. 지금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이 법인이나 재단
도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
데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로 비교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이 범죄 저지르면
전부 다 사형에 처합니까? 지금 법인이 죄지으면 해산해야 되겠다고 대변인이 직접 이
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 이것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산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종교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할 때……

○**김재섭 위원** 그러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인의 활동 자체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어떤 공익에 반하는 행위
여야 되겠지요.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가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
고 나서야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을 지시하는 듯한 명령을
하시는 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정교분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는 정교분리를 어떻게 이해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요 종교도 직접적·구체적으로 정치에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김재섭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종교 역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나, 그
러니까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분리는 사실 양쪽 모두에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형태인 어떤 헌법적 선언인
데, 지금 말하자면 잘못을 저지른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탄받아 마땅하고 처벌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해산하라 마라라는 식으로, 아직 어떤 구
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는 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위헌적인 말씀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일교 수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이 돼야지만 국민
분열이 없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존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편파성 논란이 있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특정 정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특검의 결과는 누가
봐도 못 믿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종교단체 해산 문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지
탄받아야 되는 거는 지탄받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산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잘못했으니까 사형’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직접 종교단체 지금 바로 해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통일교는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대표 경선에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 정교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종교집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을,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를 가지고 종교단체를 마치 탄압하는 듯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를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의 진상을 밝혀 가지고 통일교하고 잘못된 유착을 끊으시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끼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어떻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검찰이 나라를 망가트렸는지 그것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은 여기에서 지금 특정한, 민주당에 관련성 있는, 통일교 관련성 있는 어떤 특정한 장관님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나경원 위원님 오늘 문제가 됐거든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서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장관직 그만두고 수사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도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수사받으세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려면 본인들도 돌아보고 주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정당 해산 이게 언제부터 하던 얘기인데 이게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드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정당 해산 진정도 냈습니다. 아마 있을 텐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피고인의 위헌·위법한 계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어떤 거냐 하면 국회의원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정부 견제 기능 포기,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파악한 계엄의 실체적 하자 등 정보 미고지, 대통령 윤석열과의 통화 사실 및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 정보 미고지, 비상 의원 총회 소집 등 당대표 요구와 상충되는 의결 방해 행위, 본회의 개최 임박 상태에서의 국민의힘 당사 집결 금지 등 의결 방해 행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전 국회 이탈, 이게 구체적인 행위고 계엄 해제 방해 행위인데요.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7항입니다. 7의 마항의 4목에 보시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 이게 피고인 추경호의 범죄사실인데요. 그 범죄사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00시 00분경 및 같은 날 00시 27분경 2회에 걸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 또는 본회의장까지 이동하여 당대표 한 땡땡—한동훈이지요—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공소사실은 보면 피고인 추경호의 공소사실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피고인과 함께 ‘신동욱 의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범 관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위원들 중의 일부는 추경호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공범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공범으로 법률적으로 의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내란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해산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당해산청구라고 하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추경호 의원이 아시는 바대로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가 그 당시 국민의힘의 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소장이란다가 관련 자료들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위원장 추미애**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끌고루 다 발언을 하셨고요.

○**신동욱 위원** 주세요.

○**조배숙 위원** 저는 못 했어요.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만 못 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은 자제시켜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 너무 심해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 자꾸 우리 당이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습니다. 사전에 알고 공모를 했다면 모르지만 전혀 인지도 안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도 그런 점이 참작돼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결국 8월 달에 윤영호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한테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 내부에서 이것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윗선에서 묵살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영호가 폭로하지 않았으면 이 사실을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소시효가 12월 달에는 일부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수사를 안 한 채 국민의힘 당사를 8월 달, 9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는데, 그 법 5조에 보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안 했냐?’ 하니까 ‘이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에 보면, 2조 1항 제16호에 보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15호까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일체의 행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놔어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별로 없지요. 이 3대 특검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로 자살한 것 그리고 또 등등 해서 1차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고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 사건도 이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혐의없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중간발표를? 내용을 들어 보니까 마약사범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요. 말레이시아 말로 ‘서로 연기하자’ 이런 얘기 이게 다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백해룡 경정이 노만석 총장대행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따지듯이 얘기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해룡 경정에게 전적인 수사 권한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게 중간발표고요. 최종적으로는 백해룡 경정의 말이 어떤지 여부는 최종 결과로서 증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임은정 검사장 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혐의없음으로 나왔어요.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백해룡 경정도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 교차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백해룡 경정이 그래도 혐의 있다고 하면 그쪽 말이 맞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다른 증거에 의해서 또……

○**조배숙 위원** 다른 증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객관적 입증이 된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검찰의 수사력이 경찰보다 못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배숙 위원** 최종적으로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엄정하게 수

사하라는 취지로 팀을 짰던 겁니다.

○조배숙 위원 편을 드셨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정교분리라는 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슬림, 이슬람 국가처럼. 거기는 완전히 신정정치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니까 투표할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교분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자꾸 해산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바로 해산한다는 게 아니고요. 종교단체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 관여와 관련해 가지고 해산의 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예,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정성호 장관님, 수천만 원 받아먹고 명품 시계 받아먹은 게 민주당 전재수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일부 언론의 보도이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어쨌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도 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 정황이 있지요?

특검이 이것을 8월에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뭉쳤습니다. 민중기 특검, 그동안 한두 가지 문제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했습니까? 강압수사로 양평 공무원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은폐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본인들 사건 아니라고 하지만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지사건 범위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하명 특검답게 몰타기 공작에 들어갔다 봅니다.

이 특검 그대로 두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검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이 사건 상설특검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법무부장관이……

○나경원 위원 아니, 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설특검 여부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보면 정말 저질스러운 몰타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지원 위원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참 진짜 이런 저질스러운 물타기 공작에 대해서 언론도 다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세요. MBC조차도 ‘접촉’이라는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서영교 위원 녹취는 다 나왔잖아요, 녹취. 통일교랑 녹취한 것 내렸어?

○이성윤 위원 어레인지 했잖아요, 어레인지.

○서영교 위원 어레인지 했잖아.

○나경원 위원 나경원이 문제 됐으면요 권성동 의원보다 탈탈 털어도 먼저 탈탈 털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질 물타기 공작에 특검이 같이 부화뇌동했다면 그 책임 끝까지 물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특검 수사 엉망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도 상설특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채수 장관 사건 같은 것을. 그래서 그냥 뭉개지 마시고, 국가수사본부에 넣고서 그냥 뭉개지 마시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게 뭉갤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스티븐 레비츠키 책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반복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의 책에 나온 얘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출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민주적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합법적인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법부를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선 및 조직 장악입니다.

지금 뭐 합니까? 대법관 증원하겠다,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 강제 퇴임 및 징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법왜곡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및 지원 통제입니다.

이미 법사위를 비롯해서 예결위에서 사법부 예산을 갖고 흔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할권 제한입니다.

민감한 특정 사안을 심사할 수 있는 관할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특별재판부입니다.

다섯 번째, 법관에 대해서 정치적 비난과 심리적 압박.

법사위만 열리면 지귀연 판사 이름이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대한민국국회,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1년 내내 내란을 외치면서 여러분들,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대한민국헌법 가치가 더 존중되었나요?

정성호 장관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딱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지난해 12월 3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국가가 회복하는 과정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나경원 위원**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러한 과정…… 지금 모든 것이 더 적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딱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방법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 내각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벤츠, 정말 브레이크 없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가라면, 법률가의 양심이 있다면 막아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탄탄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는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제 어떻게 보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민주주의가 탄탄한데 이렇게 만듭니까? 사법부를 이렇게 쥐 잡듯이 합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고 내란 유죄 찍어 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똑같잖아요, 지금 읽어 주는 거랑?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 주셨고요. 민주주의 복구 절차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낸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특히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민주주의의 시원을 만들어 낸…… 영국에 특사로 갔더니 그런 굉장한 경이로움과 경외 이런 칭찬을 듣고 보니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마도 통일교 재단으로부터 금품이 수수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되어 계신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검찰에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특검은 사건번호까지 부여를 했다고 하니 특검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 인력 부족 이런 것 또 특검은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건번호를 붙여 두고 별도의 이첩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민주당이 연루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것을 엄호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판사회의회가 열려서 아마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구체성이나 명확성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법왜곡죄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일선 법관들은 재판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많이 쏟아 내고 있습니다.

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적인 쟁점은 사실인정 문제 혹은 법률해석 문제, 둘 중의 하나이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거나 또 2심 판결이 3심에서 바뀌거나 하면 그 1심 판결을 했던 판사들 또 2심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잠재적으로 법왜곡죄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인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법률해석을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들은 사실은, 법치주의 그리고 사법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주류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자와 소수자의 가치를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나아가는 그런 임무를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주류적인 기존의 판례나 또 다수의 여론에 영합하는 그런 판결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재판을 하나 했을 때 거기에 혹시 사실 문제가 좀 잘못되거나 혹은 원고나 피고나 이런 분들이 증거를 예를 들면 수백 가지 신청했을 때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왜냐하면 오랫동안 훌륭하게 법관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그러면 그중에서 관련성 있는 그런 증거들만 채택하기 마련인데 이 증거 채택이 좀 부족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결론이 바뀌었을 때는 그 부분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심각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불려 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려운 사건은 절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건을 미루어서 죽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재판을 왜 맡아서 하느냐라고 해서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법관으로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관들을, 이번에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들려준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나 또 전법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헌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물 건너가고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거론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신속하게 재판을 7~8개월에 끝낸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10년 이상 오래된 장기미제가 수도룩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선진……

○위원장 추미애 좀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톱 부분에 들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재판이 결정적으로……

○위원장 추미애 예, 이해했습니다.

행정처장님의 말씀은 우선 구체성·명확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이미 이 법안으로…… 아직 법안이 법사위만 통과됐다 뿐이지 국민께 알려지지도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인 거지요. 법령 적용을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또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냥이 아니고, 혹시 잘못이 아니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지요. 그다음

에 세 번째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또는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선 구체성·명확성, 법원 판사님들이 불안해하신다면 이 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줄 책무가 법원행정처장님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재판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요. 다른 나라의 예를 방금 드셨습시다만 ‘10년 이상 재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네팔은 우리보다 뒤늦게 내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내란 일으킨 내란 수괴 총리가 이미 사형 선고받았어요.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지요. 그분도 대법원장 출신이었습니까, 여자분이? 그렇게 신속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한번 독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왜곡죄, 언론에는 독일에서는 사문화돼 있다 이렇게 이름난 변호사님들도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잘못 전달, 거짓말을 하시던데요. 이미 2002~2017년 총 73건이 기소돼서 56건이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바로 최근 재작년에도 독일 한 가정법원 판사는 법왜곡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면직과 연금 박탈을 당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런 독일 판사님들이 재판하기 힘들다 이런 소리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정 잘못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법왜곡죄 진짜 필요하다, 국민들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성운 위원님, 어떤 사건이에요?

○**곽규택 위원** 시간 넣고 하세요, 대체토론하실 거면.

○**최혁진 위원** 방해 좀 하지 마요!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가르마가 왼쪽이어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라고 김학의를 부정한 김학의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법률 적용 잘못으로 이 법왜곡죄가 도입돼야 되겠다 하는 가장 뚜렷한 사건이 뭘니까?

김용민 위원님,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김용민 위원** 지귀연입니다, 지귀연. 지귀연 사건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지귀연이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내란 수괴를 석방하는 결정을 한 판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 행정처장님은 법치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치주의의 성역에 있는 집단이 국민입니까, 판사님·검사님들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누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추미애** 안 되지요. 그런데 판검사님들이 성역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독일에도 법왜곡죄 있어서 판사님들이 최근까지도 법 왜곡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걸 제가 방금 알려 드렸는데 우리나라 판사님들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초코파이, 카스텔라 먹었다고 기소하고 이런 수사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보살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사 나으리나 또 수사기관은. 이렇다면 법왜곡죄가 국민적 지지를 받

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대 위에 앉아 계신 분들과 국힘당만, 하필이면 저렇게 법조인 출신들이 또 많습니다.

(장내 소란)

이런 분들만 법왜곡죄를 반대하는데 이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다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7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5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증거 보전요청 관련 대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과 관련된 대안이 모두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및 제77항, 제79항부터 8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84항, 이상 2건의 대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부칙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84항의 부칙에 대해서는 제1조에—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지요—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에 있어서 2013년부터 판결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부칙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된 수정의견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전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의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김재섭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운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교육부

차관 최은옥

외교부

장관 조현

통일부

차관 김남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극철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기상청

청장 이미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